
2022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

2023. 2.



(감 사 관)

2022년도 동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2.11.21. ~ 12.2.(10일간)
- 감사범위: 2019. 10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보건·위생분야 제외)
- 감사반: 3개반 18명
- 감사중점
 -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주요사업 예산 운영현황 점검, 토목·건축 공사 집행과정 및 안전성 점검
 - 청렴 취약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동일반복 지적사례 등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 각종 보조금 관리 적정여부 및 집행·정산·평가 실태
 - 개인정보보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분야 운용 실태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징수	추급 환급	계	징계	훈계	
75	27	38	10	-	100,621	89,907	10,714	24	1	23	2

○ 처분요구 내역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야	지적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인사	근속승진 부적정	○과	주의	-	-	-	

연번	분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2	인 사	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과	주의	-	-	-	
3	인 사	신규공무원 임용 부적정	○과	주의	-	-	기관 경고	
4	인 사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의결 부적정	○과	주의	-	징계○ 훈계○	-	
5	인 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6	복 무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등	○과 등 2개 부서	시정	회수 9,214 추급 7,487	-	-	
7	복 무	병가 사용 부적정	○과 등 4개 부서	시정	회수 559	-	-	
8	일반행정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과 등 2개 부서	주의 개선	-	-	-	
9	일반행정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과 등 15개 부서	주의 개선 권고	-	훈계○	-	
10	지 방 세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과	시정	추징 16,696	-	-	
11	지 방 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과	시정	추징 642	-	-	
12	지 방 세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과 등 2개부서	시정 주의	추징 32,040	훈계○	-	
13	지 방 세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압류 11,191	-	-	
14	지 방 세	세외수입 체납금 체납처분 관리 부적정	△과 등 2개부서	시정	-	-	-	
15	지 방 세	세외수입 독촉고지 발급 관리 부적정	◇과 등 4개부서	시정 주의	-	-	-	
16	사회복지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과	시정	회수 550 추급 227	훈계○	-	
17	사회복지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⓪과	주의	-	-	-	
18	사회복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과	주의	-	-	-	

연번	분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9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실	주의	-	-	-	
20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소홀	◆실 등 6개 부서	주의	-	-	-	
21	개인정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과 등 9개 부서	주의	-	-	-	
22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과 등 24개 부서	개선	-	-	-	
23	공유재산	□□□ □□□□□□센터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실	-	-	-	기관 경고	
24	계 약	공사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	●과 등 3개 부서	주의	-	훈계○	-	
25	계 약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26	예산.회계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실 등 7개 부서	주의	-	-	-	
27	공유재산	공유재산사용 및 도로점용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과	시정	-	-	-	
28	공유재산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과	시정	추징 7,794	-	-	
29	공유재산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절차 이행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실, ①과	시정	-	-	-	
30	예산.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실 등 11개 부서	주의 개선	-	-	-	
31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 등 7개 부서	주의 개선	-	훈계○	-	
32	계 약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과, ○과	주의	-	-	-	
33	보 조 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실 등 2개 부서	주의	-	-	-	
34	보 조 금	지방보조금 교부 전 사전 확인 소홀	♠실 등 2개 부서	주의	-	-	-	
35	보 조 금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실 등 3개 부서	주의	-	-	-	

연번	분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36	보 조 금	지방보조금 원천징수 미실시	☞실 등 2개 부서	시정	추징 1,065	-	-	
37	보 조 금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실 등 4개 부서	주의	-	-	-	
38	보 조 금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과	주의	-	-	-	
39	토 목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	☐과	시정	-	-	-	
40	토 목	안전관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 미준수	●과 등 4개 부서	주의	-	-	-	
41	토 목	공사완료의 공고 등 미이행	●과, ☐과	시정	-	-	-	
42	토 목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43	토 목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업무 소홀	●과	시정	-	-	-	
44	토 목	관내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실 등 3개 부서	주의 개선	-	-	-	
45	토 목	☐☐☐☐ ☐☐☐☐ 조성공사 감독 소홀	⊗실	시정	-	-	-	
46	환 경	폐기물 배출(처리업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부적정	◇과	주의 시정	환급 3,000	훈계○	-	
47	환 경	폐기물 전자인계.인수서 오류 입력 과태료 미부과	◇과	시정	-	-	-	
48	환 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위반확인서 작성 및 관리 소홀	◇과	주의	-	-	-	
49	환 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주의 시정 개선	-	훈계○	-	
50	환 경	대기오염 측정(감시) 드론 활용 미흡	△과	주의	-	-	-	
51	환 경	건설사업 현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실 등 2개 부서	주의	-	-	-	
52	건 축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 등 행정절차 미이행	●과	주의 권고	-	-	-	
53	건 축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실 등 5개 부서	시정	-	-	-	

연번	분야	지적 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54	건축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사항	☎과	주의	-	훈계○	-	
55	건축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산정 부적정	☎과	시정	-	-	-	
56	공원녹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실	개선 주의	-	훈계○	-	
57	공원녹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미이행	☉과 등 2개 부서	시정	-	-	-	
58	공원녹지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과	주의	-	-	-	
59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과	주의	-	-	-	
60	공원녹지	□□□□ □□□□ 조성사업 정산준공 소홀	☉과	시정	회수 10,156	-	-	
61	교통	자동차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과	시정	-	-	-	
62	교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미이행	☐과	시정	-	-	-	
63	에너지	□□□□ 보안등 관련 구축사업 추진 소홀	☉과	시정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근속승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과)에서는 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의결한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에 따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을 심의·의결하여 승진임용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을 관장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중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은 모든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7급은 11년 이상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령 제3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고,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과)에서는 ◇직의 근속승진 시행시기를 20**년 *월에서 20**년 *월로 승진기준(근속승진 시행시기)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직의 근속승진 시행시기는 20**년 *월에서 20**년 *월로 승진기준(근속승진 시행시기)을 변경¹⁾하였으므로 승진기준 변경 사전의결 후 1년이 경과한 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기준을 변경한 당해연도에 변경된 승진기준을 적용하여 △과 ○○○○, ○동 ☆☆☆을 부적정하게 근속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향후 승진기준을 변경할 경우 승진기준 변경 사전의결 후 1년이 경과한 후 적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해연도 6급 근속승진 도래자(당해직급 11년) 도래 월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과)에서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청(○과)에서는 별도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없이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팀장 1인이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향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주의 요구

제 목 신규공무원 임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과)에서는 20**. *. **. 부서별 TF팀 및 휴직, 의원면직 등으로 직렬별 결원 발생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인력을 신규 임용함으로써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목적으로 “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신규공무원 임용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계획수립 당시 4급이하 정·현원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20**.*.**. 현재 4급이하 직급별 정·현원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 현재 4급이하 정원은 633명, 현원은 630명이므로 3명에 대해서만 신규임용이 가능하고, 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9명을 신규임용하여 결국 6명을 과원으로 임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9명을 추가로 신규임용하여 진출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총11명의 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기관경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 신규공무원 정원 외 임용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 하오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규공무원의 임용은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후보자의 임용시험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임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징계·주의(훈계) 요구

제 목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의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A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과에서 교육훈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B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동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C는 20**년 *월 *일부터 202**년 *월 **일까지 동구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D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동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에 따라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교육훈련의 내용 등은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구에서는 매년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간교육시간과 집합교육시간 등을 [표1]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였다.

[표1] 동구 소속 공무원 연간 필수 교육이수시간(20**년~20**년) “생략”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동일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교육실적을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또한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 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에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점검하여 오류 및 부정 입력을 방지하는 한편 오류 및 부정입력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며, 승진심사 시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훈련 실적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실적 중복승인 등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하여 E는 승진의결 당시 집합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F 등 2명은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실적 중복승인 제외 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의결되는 등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1. A의 경우

위 사람은 이 건에 대해 ‘E의 경우 20**.*.**.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코로나19 관련 상시학습(집합교육) 제도 운영방법 안내’ 공문(지방○과-****호)과 20**.*.**. 인천광역시 ▽과에서 시달한 동일 제목의 공문(▽과-****호)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과정에 한하여 집합교육 실적이 대체 인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E가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사이버교육 실적을 집합교육으로 대체 인정하여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 및 G의 경우는 당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및 중복실적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많은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훈련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과 함께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 받아 1차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고, 미충족자들에게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라고 한 후 인사위원회 이틀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결과를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도 있었지만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로서 열심히 근무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A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로서 누구보다 해당 업무를 정확히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인천광역시 인사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대체인정 교육과정은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에 한한다고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확인 없이 타 기관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여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집합교육시간 미충족자가 승진의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또한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 따라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확인은 승진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점,

특히 20**.*.**. 승진의결된 F는 승진의결일 기준으로 교육훈련 필요시간(940시간)과 인정시간(949시간)이 불과 9시간 차이이고, 20**.*.**. 승진의결된 G는 교육훈련 필요시간(783시간)과 인정시간(789시간)이 불과 6시간 차이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복실적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결과적으로 위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자가

승진 의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69조(징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B, C, D의 경우

위 사람 중 B 및 C는 20**년~20**년 기간 중 동구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인 A의 직속 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였고, D은 A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자였다.

이에 위 사람들은 A의 직속 팀장 및 부서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및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 A와 함께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의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징계] 공무원 교육훈련실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위 A에 대해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위 B, C, D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공무원근로자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과 소속으로 ◇◇◇◇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행정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20**.*.*. ‘공무원근로자 공개채용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 ‘공무원근로자(행정보조원) 채용 공고(이하 “채용 공고”라 한다)’하였다.

또한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방식으로 진행한 바, 20**.*.*. 부터 20**.*.*.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여 ○명이 응시하였고, 20**.*.*. 응시자 ○명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를 이행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20**.*.*.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20**.*.*.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였다.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사항으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응시자에 대한 서류심사 시, ① 의료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건 채용에 응시한 A는 자격증명서로 ◎면허증을 제출하였으며, 본인의

경력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응시자 A는 ◎면허증을 가진 자로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해당되나, 경력사항 중 ◇◇협회와 ▮▮▮▮▮▮ 인천◁◁◁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병원에서 근무한 ○개월만 해당됨에 따라 ‘채용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서류심사 시, 경력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 A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 건 당시 동구 ○과 ◎팀장으로서 서류심사를 직접 수행한 위 B는 응시자 A이 제출한 경력사항 중 ‘▮▮▮▮▮▮ 인천◁◁◁’을 ▮▮병원 산하 의료기관으로 판단하여 경력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은 대한◇◇◇◇ ◇◇본부 산하 조직으로서 ▮▮병원과는 무관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 [주의] 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등 28개 부서

내 용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직 기간별로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가 부여되고,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받지 않은 자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자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연가일수가 부여된다.

또한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결정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였다.

1.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일수를 [표2]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표2] 연가일수 재산정 계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text{(12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자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2항 발췌

이에 따라 동구에서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2]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일수를 부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연 15일을 초과한 병가 사용자 및 휴직자, 장기교육 및 퇴직준비 교육 파견자 등에 대해 연가일수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연가일수 재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2. 연가보상비 과다(과소) 지급 및 봉급 일액 미감액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규정」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표2]의 계산식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 또한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결근 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2]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한편,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20**년부터 20**년까지 동구 소속 공무원 중 병가·휴직·장기교육·퇴직준비교육 파견자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및 봉급 일액 감액 등 현황을 살펴보면,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등의 사유로 연가보상비 과다·과소 지급 및 봉급 일액을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6,765,020원과 봉급일액 미감액분 2,448,670원은 회수 하시고,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7,487,530원은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병가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실, ▣과

내 용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하고, 그 중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야 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 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 휴가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나. 병가 - (3) 병가의 운영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병가 사용 승인 시 허가권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규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은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이 필요한 기간 등 의학적 소견이 적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 소속 공무원의 병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동일 질병에 대한 병가 승인에 대해서도 진단서 등을 통해 병가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년부터 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없이 동일 질병을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야 하므로 해당연도 연가보상금액 회수 또는 봉급 일액 감액 및 연가저축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연가 공제일수’를 반영하여 연가보상금액 회수·봉급일액 미감액분 회수·연가저축 반납 조치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 병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기간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는 병가 기간을 반드시 공제하여 산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실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과(現 ○과)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다.

1. 공무국외 여행자 선정 및 허가 부적정

동구 ♣과(現 ♣실)는 20**. **. **. ‘◇◇·◇◇◇◇·◇◇◇◇ 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 ◇◇◇◇ 담당 공무원 ○명과 실·국별 추천을 받은 ◇◇◇◇ 등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명 등 총 ○명의 공무원을 공무국외 여행 대상으로 선정,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인 ○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 하였고, ○과는 20**. **.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거쳐 20**. **. **.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통보하였다.

규칙 제3조(허가 등) 및 제5조(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에 따르면 동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 여행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출국 예정일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여행방침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6조(심사기준), 제8조(허가여부 통보) 및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를 받은 허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하고, 주관부서와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허가 여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허가부서의 장은 ‘여행자 및 인원’에 관하여 규칙 별표2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인지의 여부, 여행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 인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허가하여야 하고, 여행목적 등에 부적합한 여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적합자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구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여행자로 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허가부서의 장은 허가를 신청한 대상자가 규칙 제6조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인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되, 대상자가 부적합한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 부적합한 대상자를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로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위 공무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중 실·국별 추천을 받은 ■실 ☆☆급 A 등 ○명은 공무국외여행 당시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주관부서인 ♠과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하였고,

허가부서인 ○과는 심사 기준에 따른 적정한 검토 없이 ‘향후 학습동아리 활동을 감안하여 관광 및 재생에 관심을 가진 타부서 직원 50% 편성하여 적정’이라는 주관 부서의 의견을 근거로 부적정하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통보하는 등 ◇◇·◇◇·◇◇◇◇ 분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자가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이번 감사기간 중 규칙 별표2 심사기준 중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적정 대상자 ○명의 공무국외여행 이후 주요 경력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귀국 후 감사일 현재까지 ○명 모두 위 공무국외 여행 관련 업무인 ◇◇·◇◇·◇◇◇◇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 및 ◇◇사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 접목 방안 마련’이라는 위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부적합한 대상자로 확인되었으며,

동구는 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학습동아리(구정발전연구동아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과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 당시 ○과에 제출한 ‘향후 학습동아리 활동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의견 역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동구 ○과는 ♣과가 주축이 되어 ◇◇·◇◇◇◇·◇◇◇◇ 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을 세웠으나 ◎국 직원 뿐 아니라 그 외 분야(○○○, △△·△△△△, ☆☆☆☆, ㉠㉠, ㉠㉠㉠)에 근무하면서 ◇◇이나 ◇◇◇◇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도 참여하여 선진문화 경험을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출장목적인 공무와는 달리 실제로 관광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공무원의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단계부터 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허가하여야 하므로 동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소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작성례)」를 마련하여 2020. 1. 2.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동안 동구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을 확인한 결과, 동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표3]의 주요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3】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표 준 안	동구 규칙 개정 필요사항
①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 변경 등 - 규칙 명칭 및 내용 중,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 →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으로 변경	① 규칙 명칭 및 내용 ‘여행 → 출장’ 미변경

② 심사위원회에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 참여 -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부서의 장 위촉 - 출장경비를 지원받은 국외공무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개정	② 심사위원회 구성 - 감사부서의 장, 민간위원 참여 규정 없음 * (현행) 내부공무원, 5인 이내 구성
③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심사기간 확대) 출장계획서를 출국 20일전 → 30일전까지 제출 - (심사기준 구체화) 현행 보고서 형식에서 체크리스트로 개선	③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 출국 30일 전 - 심사기준표 체크리스트로 미개선
④ 출장결과 보고서의 공개 철저 - (증빙자료 철저 징구) 전자항공권(E-Ticket) 등의 증명자료 포함 명시 - (공개기한 명시) 출장보고서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명시	④ 보고서 제출기한 : 30일 이내 규정 - 시스템 등록기한 규정 없음
⑤ 출장경비 환수 규정 마련 -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	⑤ 환수규정 없음

※ 자료 : 동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인천광역시동구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작성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주의(훈계)요구 및 권고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실, ■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각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거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1. 직무, 자격요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등 요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의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²⁾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 7월, 관계부처 합동) 및 블라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함.

인드 채용 가이드 북(2017. 12월, 고용노동부)에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서류, 필기,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 요인을 검토하여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모로 인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응시원서에 ‘사진’란을 삭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이후 필기 또는 면접 단계에서 사진을 요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학교명을 제외한 최종학력의 학위·전공분야만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학위증빙 등의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응시원서, 이력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서류 및 면접 등 각 채용단계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요소를 시험위원회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동안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구 각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 등 14개 부서에서는 응시자에게 응시원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학력(학교명)을 기재하게 하고 있었고, ■실 등 7개 부서에서는 면접심사 시 ‘용모’를 평가하거나 면접위원회에 응시자의 사진, 출신학교 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³⁾)에 따르면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⁴⁾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⁵⁾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선발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후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한 후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 등 4개 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관한 사항을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 등 3개 부서는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이고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국가유공자법」 따라 가점하여야 하는 채용시험임에도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가점하지 아니하였으며,

●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에 관한 사항을 명시는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점을 가점한 사실이 있다.

다만, 동구 전 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3)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인원의 상한제 미적용

4)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

5)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인원의 상한제 미적용

따라 불합격자의 응시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있어 부적정한 가점 부여로 인한 합격자 변경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면접심사 부적정 등에 따른 합격순위 변동

가. 시험점수 집계 오류에 따른 합격순위 변동

동구 ●과에서는 20**년 관내 ◇◇ 및 ▽▽, ☒☒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 및 ▽▽▽▽분야 ○명, ▲▲▲▲ 및 ☒☒관리 분야 ○명 총 ○명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및 실기심사를 거쳐 20**.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20**년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르면 ◇◇ 및 ▽▽▽▽분야 기간제 근로자는 각 전형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각 심사위원별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실기심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기점수 우수자, 면접점수 우수자, 경력이 많은 자, 세대주, 부양가족 수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동구 ●과는 20**. *. **. ●과 ◻팀장 ○○○, ○팀장 ☆☆☆, ○과 ▽팀장 ■■■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여 응시자 ○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실기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기간제근로자 ‘◇◇ 및 ▽▽▽▽ 분야’ 응시자의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심사 채점표(이하 “채점표”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동구에서는 면접위원이 응시자별로 작성한 채점표상 점수를 오류 집계하였고 합격자가 변동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응시번호 ○번 ★★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모든 면접위원의 채점표에 ○점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나 면접위원 중 ☆☆☆의 채점표에는 ○점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총점 ○점 합격순위 ○위로 합격대상자임에도 총점 ○점 합격순위 ○위로 부당하게 불합격되었고,

응시번호 ○번 □□□은 면접위원 ■■■이 부여한 점수 ○점을 ○점으로 잘못 집계하여 제대로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총점 ○점 합격순위 ○위로 불합격 대상자임에도 부당하게 합격되었으며,

응시번호 ○번 □□□은 면접위원 ■■■ 점수 ○점을 ○점으로 잘 못 집계하여 총점 ○점 합격순위 ○위로 합격했어야 함에도 합격순위 ○위로 부당하게 불합격되었다.

아울러, 위 채용시험 점수 재집계에 따라 동점자로 확인된 응시번호 ○번 ☆☆☆은 동점자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순위 ○위로 불합격 대상자임에도 합격순위 ○위로 부당하게 합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면접 평정항목별 점수 부여 부적정

동구 ■실은 매년 ‘○○○○○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채용계획’에 따라 ○○○○○ 및 관내 학교 내 ○○○에서 근무할 ☆☆를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위 채용계획에 따르면 면접심사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평정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표4]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심사위원 면접심사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4】 면접시험 심사표

	번호	평 정 항 목	평 점 기 준 점 수				위원평정점수
			배점	상	중	하	
채 점	1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0점				
	2	□□□ 기본소양 및 가치관	25점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4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15점				
	5	□□□ 근무경력	10점				
			합 계	100점			
- 30점 : 상 30점, 중 25점, 하 20점 - 25점 : 상 25점, 중 18점, 하 10점 - 20점 : 상 20점, 중 10점, 하 5점 - 15점 :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 10점 : 상 10점, 중 7점, 하 5점			·유관기관 경력 - 3년 이상 : 상 - 6개월이상 ~ 3년미만 : 중 - 6개월미만 : 하				
위 원 서 명			(인)				

※ 자료출처 : 동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구에서 20**년~20**년 실시한 9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심사표를 확인한 결과, 면접위원 평점점수가 채용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부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건의 채용에서 응시자의 점수가 변경되어 최종합격자가 변경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위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 심사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20**. *. *. 공고하여 실시한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번 ⬤⬤⬤는 합격순위 ○위로 불합격 대상으로 확인된 반면 응시번호 ○번 ♣♣♣가 총점 ○점으로 합격자로 확인되었고,

20**. *. *. 공고한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번호 ○번 ♣♣♣, ○번 ☆☆☆, ○번 ㄸㄸㄸ이 총점 ○점으로 모두 합격자⁶⁾임에도 응시번호 ○번 ☆☆☆이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동구 ■실은 20**. *. *. 공고한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대한 면접위원 평정점수에 대하여 상(30~26점), 중(25~19점), 하(20점 이하)로 평정한 사실이 있으며, 면접위원은 각 평정항목의 상, 중, 하 내에서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심사하고 이 기준에 따라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시 평정기준점수를 세분화하여 평정 점수를 부여하고 동점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채용계획 면접심사표에 평정 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실은 면접위원들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면접위원은 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동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채용공고 후 채용인원 임의변경

동구 ■실에서는 ◎◎·◇◇◇◇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채용인원 2명으로 하고 결원을 대비한 차점자 4명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6) 위 채용계획에 동점자 발생에 따른 합격순위가 정하지 아니하여 동점자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봄

20**. *. **. 공고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20**. *. **.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⁷⁾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2019)」에 따르면 공고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구에서는 채용인원을 ◇◇◇ * * * * 1명, ○○○ ◎◎◎◎ 1명 총 2명으로 하여 공고하였음에도, 채용 과정 중 시설종사자의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이 예상되자 변경계획서 및 변경 공고 등 없이 임의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채용하였고, 예비합격자 역시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불합격자 채용서류 보존 필요

동구 각 부서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자의 응시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 파기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채용일정 전체 및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및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공공기록물’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하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는 채용시험 불합격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합격자의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채용 부서에서 동구 거주기간,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가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서류 보존 관련 상반된 법률·지침으로 불합격자 응시자료가 파기되어 감사 활동 및 채용비위 피해자 발생 시 그 구제절차 진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예외사항’⁸⁾을 준용하는 경우 ‘불합격자 서류를 포함한 채용관련 서류의 영구보존이 가능한 점’을 들어 각 공공기관에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보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구에서도 불합격자 응시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적절한 보존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254P)

⑤ 공공기록물인 채용서류의 미파기

- 구인자가 「공공기록물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서류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등록·관리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기록물을 지체 없이 파기)

* 개별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는지,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개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응시원서 등 표준양식을 전파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를 정비하는 등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면접심사 점수 오류 집계 및 면접 평정항목별 점수를 부적정하게 부여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감사·인사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격자 서류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임대사업자, 가족간 유상거래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이를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 **호(△△△△) 등 2개소의 취득세 등 8,310,2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차량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5항에서는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하나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호 등 2개 차량의 취득세 등 885,4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가족간 유상거래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목에서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취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증여 등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율(3.5%) 및 유상 세율(1%)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에 대한 취득세 등 1,543,88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지목변경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ㄱ에 대하여 취득세 등 1,499,23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5. 위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등 8개소의 취득세 등 1,108,38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등 11개소의 취득세 등 3,349,25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임대사업자 감면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16,696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위법건축물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위법건축물 재산세 관리 부적정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확인된 위법건축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 ◎ 등 11명의 재산세 등 217,67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이며, 같은 법 제143조, 제14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고, 제2호에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공장 등)에 대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 ◇ 등 3명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424,58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642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훈계) 요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정의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경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경감되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 ●과 2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 하여야 함에도 ◎ 등 7명의 과태료 32,040,000원을 미부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하여 32,04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수차례 상당 금액의 과태료 본 부과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미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로사용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⁹⁾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 ●과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 재산(부동산, 자동차)을 적극적으로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조치 하여야 함에도,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21건, 체납액 11,191,02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압류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21건, 체납액 11,191천 원을 조속히 압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납세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으로서 독촉,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금 체납처분(시효결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미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부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¹⁰⁾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징수권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납입고지와 「민법」

10) 납세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으로서 독촉,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제168조의 각 호에 따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와 ●과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에 따른 시효결손을 하여야 함에도,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6건, 체납액 11,079,68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시효 경과된 6건, 체납액 11,079천 원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재산압류, 회생채권, 법원경매 등)에 따른 시효 경과여부를 재검토하고 검토결과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결손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세외수입 독촉고지 발급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독촉)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8조(독촉) 제1항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도로사용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 ■과, ●과, □과 4개부서에서는 세외수입금 납부기한 미납부

자에게 체납처분의 첫 단계인 독촉고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과태료 등 175명, 37,037,960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과태료 등 175명, 37,037천 원에 대하여 조속히 독촉장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각 부서에서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인 독촉장 발급을 세외수입금 체납자에게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훈계) 요구

제 목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읍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되,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정기 지급하고, 만일 수급자의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 생성기준일인 매월 15일 이후이거나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급여가 미 지급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급여 지급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된 급여내역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되, 만일 생계급여 신청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수급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실제소득으로 반영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결정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며,

추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지급 되는 기초 생계급여와 우선 지원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긴급지원금 일할분과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해당 월의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군·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 이를 소급지급 해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구 읍과에서는 보장결정 월에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할 36건의 급여가 지급지연 되었으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소홀, 기초 및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 착오산정 등으로 인해 10건의 급여가 과소 혹은 과다하게 지급 되었다.

생계급여 부적정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구 생계급여 담당자는 ○○○○ 등 7명의 급여결정일이 급여자료 생성기준일(15일) 이전으로, 해당 월 정기지급일에 급여자료를 생성·확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결정월에 정기지급하지 아니하고 20일 이후 추가지급하거나 익월에 지연하여 지급(지급 기준일로부터 8~30일 경과시점 지급, 신청일로부터 70~124일 경과시점 지급)하였고, 수급자 ⊕⊕⊕ 등 22명에게는 급여결정월에 추가지급해야 할 생계급여 총 25,023,980원을 지급기준일로부터 17~29일이 경과(급여 신청일로부터 53~119일 경과)된 익월 정기(추가)지급시점에 지연하여 지급 하였으며,

수급자 ○○○○의 경우 20**. *. *.에 급여를 신청, 20**. *. **에 급여결정 됨에 따라 생계급여 담당자는 20**. *월 생계급여 정기 지급일(*. **)에 ☆☆☆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20**. *월 정기 지급일(*. **)에서야 5개월치(급여 신청월인 **. *월부터 **. *월까지) 급여 ○○○원을 뒤늦게 지급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급여담당자는 해당월의 긴급복지지원급여와 기초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착오없이 지급되도록 해야 하나, ☆☆☆의 생계급여를 착오 계산하여 106,620원이 과소 지급되었고, ◆◆◆ 등 8명의 생계급여는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549,74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수급자 ★★*의 경우, 20**.*.**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로 신규선정되었으나 *월 급여 정기지급일이 아닌 20**.*.**에 지연하여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월부터 소급지급될 생계급여가 착오없이 산출되었는지 지급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했어야 함에도 120,00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생계곤란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동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마감일자 이내에 입력한 대상의 생계급여를 정기 및 추가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나 압류방지통장으로의 교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대상자 미생성 등 일부 사유로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기급여지급은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답변(행복e음 접수번호 :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따라 수기지급이 아닌, 수급자에게 유선으로 지급일을 통지하는 등 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20**년부터 다양한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음을 감안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일부대상자를 제외하면,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생계급여 지급 지연 등 관리소홀에 관한 사항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추가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기지급 지양에 대한 근거로 동구에서 제시한 행복e음의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답변내용인 아래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급여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급여지급 근거를 토대로 수기지급 등 처리됨이 확인되며,

[참고자료] 행복e음 복지광장 질의답변

구분	내용
접수번호 / 접수일	***** / 20**.*.** 11:43
제목	생계급여 수기지급 문의(지침문의)
내용	문의할 대상자는 3월에 소득인정액 기준초과로 생계급여 미지급되었고, 퇴사하여 4월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으로 확인되어 생계급여 재책정이 되지 않음 부양능력있음 관련사항은 민원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이나, 부양능력있음 확정으로 4월 생계급여가 미생성될 경우, 수기지급이 가능한지 답변요망
답변자 / 처리일	ㅂㅅㅅㅅㅅㅅㅅ과 / 20**.*.** 16:24
처리결과	수기지급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만약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내부방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는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임과 수급권자의 생계유지 등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코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규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한다면,

동구 ☞과 급여지급 담당자는 급여지급 시점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급여지급 전 수급자에게 유선으로 지급일을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급여가 지연되지 않고 보장결정월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해야 하며, 급여 지급전에는 부적정한 급여지급이 없도록 착오산출된 급여가 없는지, 혹은 보장결정자 중 미생성으로 누락된 급여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급여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급여지급 담당자는 해당월 급여생성 기준일(15일)이전에 보장결정되었음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급여생성이 누락되거나 급여생성기준일 이후 보장결정된 경우 혹은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생계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급여가 지체없이 지원되도록 정기지급과 마찬가지로 내부결재를 통한 지급절차를 거쳐 추가지급 처리하고, 신청월 기준 상계지급 등 세부적인 급여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명확히 기록, 관리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한 급여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위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549,740원은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226,620원에 대하여는 지급조치 하시고, 향후 생계급여 지급지연, 과소·과다 지급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생계급여 지급지연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업무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①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하는 바, 조건제시유예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예외적으로 군·구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대상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등 시험준비생,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현재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에 해당되며, 「자활사업 안내」에서 각 대상자별 선정기준 및 제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지침을 근거로 이에대한 확인·조사결과를 통해 조건제시유예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군수·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 대상자는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연 2회까지 1회 최대 3개월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 가능하나, 다만 이 경우에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하되,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부상 등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 세 번째 기준은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가지 기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 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 ㉠과의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9명의 대상자가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됨에 있어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심사 시점의 진단결과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가 아닌, 과거의 진단이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사실확인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증빙서류가 미비한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건제시유예 신청대상자 중 ☒☒☒, ◎◎◎, ▲▲▲의 경우 20**년~20**년 중 각 2회에 걸쳐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되었는데, 해당기간에 제출된 3명의 진단서(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조건제시유예 신청 시점의 치료(예상)기간,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누락된 채, 동일 의료기관에서 병명과 치료의견은 별다른 변경사항 없이 발급년월일만 변경하여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관련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3개월씩 6개월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하였고.

조건제시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되기 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예결정처리를 해야 함에도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67일이 경과한 이후에 유예기간을 소급하여 결정처리를 하는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제출서류 및 사실확인조사를 토대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판정기한 3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 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되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정 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촉구기한 내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우편 또는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만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 제5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문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기한 2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예정자 안내(통보) 소홀, 재판정기한 경과자 발생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장애인 지원에 관한 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착오 없이 수행되도록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의 업무처리 상태를 지속 관리·독려하고, 부적정 혹은 미처리 대상자에 대한 조치 안내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 확인 결과, 재판정(촉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기한 내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재판정 지연처리 등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동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 등 3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등록 장애인 ○○○ 외 9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에서는 재판정기한 도래자 ★★★ 등 3명에게 재판정 및 촉구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 등 4개 동에서는 재판정대상자 ❖❖❖ 외 10명에게 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재판정 통보를 해야 함에도 통보기준일로부터 9일~252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재판정 이행을 통보하였고, ◎동 등 8개 동에서는 *** 등 14명에게 재판정 기한 1개월 전 해야 할 촉구 통보를 최대 47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시행하였다.

또한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장애등록취소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동 등 8개 동에서 재판정기한 경과자 20명을 청문 및 장애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 없이 대상자가 뒤늦게 재판정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였으며, 특히 ☆동, ▲동, ☆동, ♠동에서는 장애 재판정 기한일을 경과한 ○○○, ★★★, ☆☆☆, ▲▲▲, □□□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133일, 252일, 389일, 444일, 636일이 경과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였고,

⊕동에서는 시 ☒과와 동구 ●과로부터 20**. *분기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안내를 20**. *월과 20**. *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받았음에도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503일이 경과된 감사일 현 시점(**. **. * 기준)까지도 재판정을 받지 아니한 기한 경과자 ▽▽▽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장애인등록취소 등 후속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 **. **에 촉구통보만 재차 하는 등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구 ●과에서는 장애재판정 재판정·촉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재판정 지연처리 등 장애인재판정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가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해 1년 이내로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음에도 동구 ●과에서는 재판정 대상자 9명에 대하여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재판정 유예 결정하고 이를 개별 상담 내역에 기록처리 하였고, 재판정 유예사유 또한 지침에 규정된 유예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유예처리 하는 등 장애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유예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자에 한해 장애재판정을 유예처리 하시기 바라며,

②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촉구 통보 등 일련의 절차가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동구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신고되어 운영 중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취약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용아동으로부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아동에 한해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5만원 한도 내에 수납 가능하며, 수납 시 반드시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후원금 관리 분야의 ‘후원 제한’ 사항으로, 이용 아동의 60% 이상이 돌봄취약아동인 만큼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였고, 2022년도 부터는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이용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모금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동구 지역아동센터 7개소 후원금 모금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보호자 43명으로부터 총 15,907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동구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모금 부적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 및 이용아동 보호자 43명(돌봄 취약대상 23명(53%), 일반대상 20명(47%))으로부터 총 15,907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일부 후원자의 경우 100천원, 160천원, 200천원을 일시금으로 후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원한 대상자는 월 5천원부터 월 80천원씩 후원하여 후원자 개인으로부터 최대 1,260천원을 모금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교육 및 정서적 지원과 문화 체험활동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세대의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동구 ■실에서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부적정 모금실태를 감사시점 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이용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¹¹⁾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¹²⁾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실에서는 매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사용자계정 관리 점검결과 제출 요청’ 문서를 전 부서에 시행하면서 점검 대상시스템 외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 후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달하였으나 ❀❀❀❀❀공동이용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¹³⁾는 점검 대상시스템 목록에 해당시스템이 빠져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락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 및 접속기록 보관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1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13)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동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발체)

또한, △△△△△△△△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은 동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과 외)에서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미작성,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위탁사항 미공개 등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기관 의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소홀 관련과 관련하여 ■과에서는 ㉹㉹㉹ 전자통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나 위탁계약 시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고’를 일부 기간(20**. *. **.~*. *.) 동안만 게재하였고 관련 규정을 뒤늦게 인지하여 감사기간 중인 **월부터 다시 게재하였다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항 공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위탁계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시 점검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계약서 작성,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위탁사항 공개 등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과, ◇과, □과, ●과, ■과, ☆동, □동

내 용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46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파기 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도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 제공 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를 회신하면 이를 기록·관리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표기된 보관기간과는 다르게 파기 기록을 관리하고, 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소홀히 관리하였으며 수사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파기결과를 문서로 회신 받아야 하나 일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표기된 보관기관에 맞게 파기기록을 관리하고 자동 삭제의 경우도 파기 기록을 기재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39조(안내판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①설치목적 및 장소 ②촬영

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안내 (예시)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종 복도(360°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32-000-0000)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3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췌

그러나, 동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설치한 안내판에 설치 장소,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안내판을 소홀히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에 설치장소, 수탁관리자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등 안내판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관경고

제 목 □□□ □□□□□□센터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구는 20**년 **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20**년도 ◇◇◇◇ ◇◇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총 10개 사업,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선정 후 국토교통부는 “20**년도 ◇◇◇◇ ◇◇ 시범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결과 통보 문서(국토교통부 ○과-***, 20**. *. **)를 통하여, ‘□□□ □□ □□□□ 센터’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의견을 통보하였다.

□□□ □□□□□□ 센터 사업에 대하여 주민수요 조사, 사업참여 조직 및 조성 후 운영주체를 구체화하여 보완하라는 국토부의 권고의견에 동구는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였으나, 사업참여 조직 및 운영주체를 구체화하여 보완 조치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동구는 ◇◇◇◇ ◇◇사업 중 ‘□□□ □□□□□□센터 조성사업’ 과 관련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 내 건축물 전체 소유자에게 사업안내문 및 매매 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개소의 위치 및 소유자를 파악하였다.

이후 매매의향을 나타낸 소유자의 각 건축물 면적 및 위치 등을 분석하여 매입 물건 검토보고(○과-****, 20**.*. **) 및 □□□ □□□□□□센터 조성 계획(○과-****, 20**.*. **)을 수립하여 ☆☆☆☆ 내 건물 5개소(매입비용 총 351,949천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였다.

동구는 20**년 *월부터 같은 해 **월까지 ‘□□□ □□□□□□센터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 내 건물 5개소를 매입하면서, 매입 기간 중인 *월에 ◇◇◇◇◇◇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과-****, 20**.*. **) 하여 당초 ‘□□□ □□□□□□센터 조성사업’을 ‘○○○○ ○○○○○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 ○○○○○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건(103,760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 조성 관련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2건은 각각 20**년 *월, *월에 완료되었으나, ○○○○ ○○○○○ 조성 관련 건물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수행 기간 중 ☆동 **번지 일원의 ★★☆☆정비 사업 추진으로 기 매입한 건물 5개소를 대상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20**년 **월 **일 해당 용역을 계약 해지하였다.

인천광역시 ❀❀❀❀사업 추진현황(20**.*월말 기준) 소규모 ★★정비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 **번지 일원은 20**년 *월 *일자로 ★★☆☆정비사업 조합설립 되었다.

이에 따라 동구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비 및 용역비로 총 374,209천원의 예산을 투입한 ☆☆로 **번길 ** 외 4개소는 행정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실로 방치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동구는 20**년 **월 ◇◇◇◇ 내 대체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를 통하여

20**년 **월 **일 대체사업 대상지 건물 3개소를 추가 매입하였다.

대체사업 매입 부지(☆동 **외 *)를 대상으로 20**년 *월 **일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년 *월 **일 ○○○○○○ 조성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간적, 운영적, 예산 지원적 측면에서 사업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20**년 *월 **일 중지하였다.

이후 동구는 ‘○○○○○ ○○○○○○’ 사업을 ‘▼·▼▼ ▼▼▼▼-▼▼▼▼▼ 지원센터’ 사업으로 전체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20**년 **월 **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다.

한편, 동구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최초 사업 예정지 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대체 사업지를 확보한 사항에 대하여 기 매입한 ☆☆☆☆ 5개동(매입비 352백만원)은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 정산 시 매입비 352백만원은 전액 구비 부담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동구는 ‘□□□ □□□□□□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변경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의견,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기관경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취득한 공유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을 건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공사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한다.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3) 수정공정예정표
-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 5) 그 밖의 참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1. ▷▷▷ ▷▷▷▷마을 조성 전기공사 준공검사 관리 소홀

동구는 20**년 **월 **일에 계약상대자 (주)☆☆와 「▷▷▷ ▷▷▷▷마을 조성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과 ○담당자는 「▷▷▷ ▷▷▷▷마을 조성 전기공사」의 계약상대자인 (주)☆☆가 제출한 준공계를 20**년 *월 *일에 접수하였다.

한편 감독부서의 감독공무원은 준공기한인 20**년 *월 **일과 동일한 일자를 준공일자로, 준공계 접수일자(20**.*.*)와 동일한 일자에 검사 완료하였다는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과에 제출(○과-****, 20**.*.*) 하였다.

(주)☆☆가 제출한 준공계를 확인한 결과 (주)☆☆는 실제준공연월일 및 준공계 제출일자를 20**년 *월 ○일과 같이 빈란으로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처럼 계약상대자인 (주)☆☆가 준공완료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준공계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은 어떠한 보완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감독공무원은 준공계 서류를 문서등록 대장에 접수하지 않아 실제 준공계 제출 일자의 확인이 불가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준공검사 완료일자(20**.*.*)에 준공검사(감독)조서와 함께 제출하여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 제출일자는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약담당자는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담당자는 준공신고서에 제출일자가 20**년 *월 ○일과 같이 빈란으로 되어있어 준공기한 내에 제출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함에도 준공계를 별도 검토 없이 준공기한 이후에 접수하였으며, 감독공무원의 준공검사(감독) 조서만을 근거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 빗물펌프장 구관수문 교체공사 관리감독업무 소홀

동구는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통하여 ○○○○○○ 빗물 펌프장 시설물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고자 (주)◆◆와 계약금액 ○○○원의 구관수문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 (주)◆◆는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초 과업지시서의 시공방법(가설물

설치 및 철거, 작업발판 철거 및 재설치)을 중장비 크레인 30ton을 100ton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감독공무원과 구두로 합의 후 변경된 시공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하려는 시공방법이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검토하여 승인·통보하여야 하나 임의로 판단하여 당초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완료일에 준공계를 접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 (주)◆◆는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당초 착공내역의 시공방법(가설물 설치 및 철거, 작업발판 철거 및 재설치)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미 시공비 22,705천원을 정산 및 감액하지 않은 채, 당초 계약금액으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감독공무원은 변경된 시공방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준공계 접수 시 준공내역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 (주)◆◆가 실제 준공내역과 달리 작성하여 제출한 준공내역을 그대로 접수하였다.

이후 감독공무원은 정산준공을 재 시행하여 (주)◆◆로부터 정산 준공내역서를 다시 받아 미 시공비 22,705천원을 사후 정산하여 최종 준공 합격 처리하였다.

이처럼 감독공무원은 ‘◎◎◎◎◎◎빗물펌프장 구관수문 교체공사’의 준공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설계변경 및 준공 결과의 이행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변경 계약 없이 준공 처리하는 등 계약업무 절차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3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 가능한 건설업 등록 업체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구는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 중 관련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2건(36,500천원)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동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건설업자의 계약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과, ⊖과, ⊙과, ▣과, ⊚과

내 용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1항은 법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입의 징수는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하되, 특히 기금의 수입처리 등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1항에 의해 기금운용관이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징수의 방법은 징수관(기금운용관)이 「지방회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 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¹⁴⁾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부 고지한 수입금을 수납한 수입금출납원(기금출납원) 또는 금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및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에 따라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기금운용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금을 운용하는 각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특히 수입금의 등록(부과), 징수결의, 납부고지, 수납확인 등 기금 수입처리 전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와 형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동구는 감사기간 현재 총 10개의 기금을 10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년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동구 기금수입금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금 등 총 7개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수입금 부과, 징수결의, 납부 고지, 수납처리’의 회계절차 미준수, 시스템을 통한 납부고지서 미발부, 징수결의 누락 등 총 51건 기금운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 수입금 처리절차 미준수

기금담당부서는 기금의 수입이 발생하면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에 수입금 내역(부과), 고지서 정보, 징수결의 사항을 등록하고 징수결의서에 기금운용관(분임 기금운용관)의 날인을 득한 후 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입이 완료되면 수납처리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 등 7개 부서는 수입금의 부과 2건, 징수결의 6건을 납부 의무자가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지체하여 e호조에 임의로 등록하였고, 6건의 납부고지 문서통보도 지체하였으며 특히, 3건은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입금을 수납하였다. 또한, 납부 완료된 12건의 수입금 수납등록을 지체하였다.

2) 수입금 등록 누락

◇◇◇◇◇◇◇◇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는 ◆실 등 4개 부서는 연도 내 발생한

1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제2항 ‘2호 납입고지서, 3호 납부서, 4호 납입서’ 등의 고지서 발부

수입금의 부과등록 1건, 징수결의등록 4건, 수납등록 4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등록처리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시 실제 수입액과 징수부 상 수입액의 불부합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징수결의 날인 누락

수입금의 징수결의는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이 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결의서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확정하여야 하나 ◇◇◇◇◇◇◇◇기금을 운영하는 ◆실 등 3개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총 4건의 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날인을 누락하였다.

4) 납부고지서 미발부

납부 의무자에게 수입금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납부(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기금을 운영하는 ◆실 등 3개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총 10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고지서 없이 납입계좌를 명시한 문서만을 통보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의 기금운영 실태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구 에서는 소관 기금 등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구 ◆실은 자체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보고(◆실-****, 20**. *. **) 하였다.

그러나, 금번 동구 종합감사를 통하여 기금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금수입금 운영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써 동구 ◆실의 자체 점검이 미흡했음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지방회계법」 등 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입·지출금 처리, 결산 등의 기금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사용 및 도로점용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도로점용허가를 공유재산사용허가로 처리한 사항(☆동 *-***)

인천중부△△△에서는 20**. **월 ◇◇◇◇◇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 이설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동 *-***번지(지목: 도로, 점용면적: ○m²)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과에서는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야 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를 근거로 공유재산(무상)사용으로 허가를 하였으며, 20**. **월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사항을 공유재산사용으로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1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는 소화전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용허가기간을 영구로 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2.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동 ***-* 외 *필지)

동구청 ❖과에서는 20**. **월 ☆☆☆☆ 하늘전망데크 및 조형물 설치 추진 사업을 위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 ***-* 외 *필지(지목: 도로 외, 점용면적: ○m²)에 대한 부지 무상사용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과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1조의 사용허가기간을 따르지 않고 영구로 사용허가를 하여, 20**. **월부터 20**. **월 현재까지 「공유재산법」 제21조의 사용허가기간인 5년 이내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3. 공유재산대장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과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하였던 총 619건에 대해 공유재산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고 별도의 대장관리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허가기간이 영구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유재산 시스템 입력이 누락되어 있는 사용허가 내역 총 619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서 등을 토대로 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연도별로 재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 입력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시스템 입력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시스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제66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71조제2항에는 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11개의 주유소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주유소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에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주유소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며 부과 기한을 미 준수하여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한 20**. *. **에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20**년도 세입 징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며 주유소 2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총 5건 7,794천 원을 미 부과하는 등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미 부과된 주유소 2개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7,794천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점용료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내 용

1.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주관 실·과장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할 때에는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에서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정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소요 경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실 외 총 9개 부서의 총 23건 40,530천 원에 대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의 구입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수물품을 취득·사용 하였으며,

특히, ♣실 등 총 3개 부서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 총 5건 12,017천 원에 대해 정수물품을 선 구입한 후 사후에 물품관리관에게 정수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정수물품구입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월 ◇◇◇◇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며 천정형 에어컨 외 ○개 물품에 대해 물품 취득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물품이 전산화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 *월 ◇◇◇◇시설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에서 사용하던 구 소유 물품의 사용 필요성도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사실 여부 확인 후 물품반납을 명하여야 했으나,

㉠과에서는 20**. *월 ◇◇◇◇시설 운영 종료 계획 보고 후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에게 별도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물품이 20**. **월까지 폐쇄된 시설에 보관되도록 하는 등 물품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폐쇄된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천정형 에어컨 외 10개 물품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물품을 등록하고, 해당 물품의 관리전환, 불용품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수 책정 승인 이후 예산편성 및 취득하시고, 특히 사업 추진 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수책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동

내 용

1.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은 2020. 6. 9. 개정 시행(공포)된 사항으로 부칙(법률 제17390호, 2020. 6. 9.) 단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0. 9. 10.부터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20**년도 제*회 추가경정 예산(20**. *. **. 의결)부터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했다.

그러나 동구 ◆실(○팀)에서는 2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부터 2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20**. *. **. 의결)까지 일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해당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계상함으로써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구 ◆실(○팀)에서는 ◇◇◇◇기금특별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규모가 각 ○억 원과 ○억 원 이하로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 편성 시 보조금 내시 변동 및 시급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 **월 이후) 중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한 내역이 없어 예비비 편성한도 준수 시 시급한 사업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국·구비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해 연도 국비 사업 완료 후 발생한 국비집행잔액에 대하여 다음해 예비비로 넘어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승인때까지만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비비가 1%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세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세출)으로 편성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미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운용 실무, 5. 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한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편성 시기에 예측이 가능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동구 ●과, ○과 및 ▣과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정한 시기에 이를 검토하지 않고 지출이 임박한 시기에 예비비 사용을 요청하여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에서는 20**년 본예산 편성 당시(20**년 **~**월 경)에는 ▲▲▲▲ ▲▲▲▲ 구성, ☆☆☆☆☆ 채용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 규모, 예산 편성 부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20**. *. **. ▲▲▲▲ ▲▲▲▲ 구성 관련 부구청장 주재회의를 통해 ☆☆☆☆☆ 채용이 결정되어 ▣과에서 20**. *. *. ☆☆☆☆☆ 채용계획이 결재되었으나, 채용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채용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로 20**년 선거 등으로 *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여 예비비 사용을 요청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지적사항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1년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조직 구성, 인력 운영과 소요 예산 편성 등의 사항은 미리 검토하여 준비되어야 했던 것임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법률 시행 이후 관련 사항을 추진하느라 소요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적정하지 않음을 지적한 사항으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사항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어 예비비를 요청하여 집행한 사항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예산의 전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15)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및 회계연도 경과 후의 전용과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전용을 제한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은 2020. 6. 9. 개정 시행(공포)된 사항으로 부칙(법률 제17390호, 2020. 6. 9.) 단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1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운용 실무, 4. 예산 집행, 예산의 변동, 나.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3) 예산의 변경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0. 9. 10.부터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의 전용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되어 적정 과목으로의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시점에 추가경정예산 등의 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전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동구 일부 부서에서는 2020. 9. 10.이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목으로의 전용을 요청하였고, ◆실(○팀)에서는 이를 승인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실(○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사항과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사항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신속집행 등을 위한 전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지적사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목으로의 전용(목그룹이 다른 경우) 요청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등의 변경 사항이 추가경정예산 등의 편성시기에 검토하여 반영이 가능했던 사항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집행이 임박한 시기에 전용을 요청하여 승인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 예산편성과 운용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민원 답변내용은 전용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전용 대상 사업이 기존 예산서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항으로, 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전용을 요청하고 승인함에 따라 오히려 전용 관련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전용하였다는 의견은 적정하지 않다.

또한 ◆실(○팀)에서는 ★★☆☆ 공모 선정 직원에 대한 동구사랑상품권 구입

관련한 전용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능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예비비의 사용은 내재적 제한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집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전용 제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인 제한 사항이며, 상기 지적사항은 반드시 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전용 제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한 사항으로, 제시된 의견은 적정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기타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예산의 전용 요청과 승인 시 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 **월 이후, 이하 같다) 중 총 12건(용역 9건, 물품 3건)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¹⁶⁾ 이상인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¹⁷⁾에 대하여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 원

1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①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특수 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아닌,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공고 사항도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공고되었다.

그러나 ⊗⊗실에서는 당초 입찰이 2회 유찰된 후 ●과의 재공고 입찰 진행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사전심의 및 보안성 검토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재공고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는 해당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임을 인지한 것임에 따라 적어도 이후의 입찰공고 요청 시에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입찰은 유찰(1건 응찰) 후 응찰한 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 하여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협상적격자 선정기준(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적용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것이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협상적격자 선정기준[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부적정하게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별 배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로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등을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별표1>로 정하였고,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 9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 문서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2/3 이상 위원만 출석한 경우 위원수에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과, 내부규정으로 평가위원 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통보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살펴보면,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해당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미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구 ○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12건의 계약 중 동구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한 7건의 제안서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20**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5건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동구 계약정보시스템에 게시하며 평가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제안서 평가 결과의 공개에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인원수가 확보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따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월 이후, 이하 같다)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계약예규에 따라 특허를 받은 물품의 제조·구매,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을 사유로 하여 12건의 계약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1. 특허제품 수의계약 요청 시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 미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4호사목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주의사항에 따르면 특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 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동구 ○과에서는 20**년 “◆◆ ◆◆◆◆◆◆◆◆ 구입”과 관련하여, 특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것을 사유로 ●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방계약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과에 제출하지 않아, 수의계약 적용사유 판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에 소홀하였다.

2. 수의계약 체결 관련 검토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6호라목과 제1항제8호다목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성능인증제품 등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주의사항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품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다. 세부평가 방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을 사유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히 검토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인증 등)에 해당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품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동구 ○과에서는 20**년 이후 □□□□ □□□□지역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 ◇◇◇◇ 및 ☆☆☆☆☆ 등을 구입하며, 해당 제품이 성능인증을 받거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을 사유로 ●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 ◇◇◇◇ 및 ☆☆☆☆☆ 등의 제품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유(성능인증, 혁신제품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제품이 존재함에 따라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비교 검토하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및 혁신제품이 지정된 사유만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수의계약 요청된 제품과 관련한 검토자료가 미흡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검토·첨부되어야 하는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같은 조건에서의 경쟁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계약체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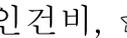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인건비,  휴일근무수당 지원 등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며, 과에서는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교부 전 사전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읍실, ㉠과, ㉡과, ㉢과

내 용

1.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혼용 미확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기존 일반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읍실과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통장을 혼용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자부담금 예치 여부 미확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1조(교부신청) 및 제42조(교부결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자기부담능력 유무를 조사·검토

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전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 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 및 ●과에서는 자부담금이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출이다.

보조사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성 사업이 아니고,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민간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 성격상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과에서는 “○○ ○○ ○○○ ○○○ ○○○ 개발” 사업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 집행 계획 중 간접비(일반관리비)에 대한 세부 항목 검토 없이 승인이 이루어졌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전용 통장을 확인, 자부담금이 포함된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 예치한 통장 사본을 확인 후 교부하시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과, ⊙과

내 용

1. 회계연도 후 집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에서 추진한 “20**년 ⊗⊗⊗ ⊗⊗ ⊗⊗⊗⊗” 사업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후에 집행하였고, ⊕과에서 추진한 “20**년 ✦✦✦ ✦ ✦✦✦✦ ✦✦” 사업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후에 집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적없이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2. 지출결의서 미작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 ☆☆” 보조사업자 인천광역시 ⊙⊙회, “20**년 ◆◆◆◆◆ ◆◆ ◆◆◆◆ 사업” 보조사업자 ⊗⊗⊗⊗⊗ ⊗⊗ ⊗⊗⊗⊗, “20**년 ◇◇◇◇◇

◇◇ ◇◇◇◇◇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 ▽▽ ▽▽▽▽▽ ▽▽▽▽ 인천광역시 동구지회, “❖❖❖ ❖❖ ❖❖지원” 보조사업자 인천광역시⊕⊕⊕⊕⊕⊕⊕ 동구지회에서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출사유 및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또는 지출품의서) 없이 사용 내역 및 신용 카드 영수증, 이체영수증만을 지출 증빙으로 제출하는 등 회계 처리가 부적정하였으나, ♠실, ■실, ⊕과, ⊙과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가 없었다.

3. 지출 증빙자료 미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8조(실적보고), 제49조(정산검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 ■실,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였으나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가 없었다.

또한 ♣실에서는 “☆☆☆☆ ☆☆ ☆☆ 지원”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가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혼동으로 취소 및 재발행을 하였고, 취소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 하였으나 ♣실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4. 계약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 ㉠㉠㉠㉠ ㉠㉠ ㉠㉠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는 ‘◆◆◆◆◆◆◆◆(◆◆) 제작’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실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시고, 보조금 집행 시 지출 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②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입찰기준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원천징수 미 실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과

내 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시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각종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및 제20조(근로소득), 제21조(기타소득)에 따라 원천징수²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 ■실,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았다.

20) * 연도별 기타소득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세율

구 분	2018.3.31.까지	2018.4.1.~2018.12.31.	2019.1.1.부터
필요경비율	80%	70%	60%
원천징수비율(지방소득세포함)	4.4%	6.6%	8.8%
과세최저한	250,000원 이하	166,666원 이하	125,000원 이하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미징수된 인건비 소득세 1,064,910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들이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미 실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실, ⊕과, ⊙과

내 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8조(실적보고), 제49조(정산검사)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담당부서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실, ■실, ⊕과, ⊙과에서는 정산검사를 실시 하지 않거나, 분기별 지도점검 또는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하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보조금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공익사업 추진능력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단체별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동구 ◇◇회 등 5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1.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 거래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동구 ◇◇회 등 5개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구 ◇◇회, ☆☆협의회, ◎◎협의회 등 3개 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 없이 지출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또한, 자부담금 집행의 경우에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동구 ◇◇회 등 4개 단체에서는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 없이 영수증만 받고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나 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2. 보조사업 추진 관련 문서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라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동구 ◇◇회 등 5개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접수하지 않고 종이문서로 보관하다 분실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감사기간 내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교부 신청 시 제출된 계획대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총 15건의 실적보고서 중 동구 ◇◇회, ☆☆협의회 등 2개 단체에서 20**년 추진한 실적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실적보고서 또한 전자문서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보조금 심사결과 미통보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보조사업자인 동구 ◇◇회 등 5개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동구 ◇◇회 등 5개 단체에서는 보조사업 완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20**년에 추진한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종료일이 20**년 **월 **일이나 실적보고서 제출일이 20**년 *월 **일로, 38일 지연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금지출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전용통장 사용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부담 지출 시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 [주의] 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 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시고,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 등 관련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자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실적보고서가 지연 제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실적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거 온나라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ㄱ과

내 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면수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 공영주차장 등 4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면수가 법정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법정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면수를 미충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안전관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실, □과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1항에는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의 기준을 명시 하면서 공사 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 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의 세비목은 운반비, 가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신호수의 배치 비용 등 안전관리비는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 20**. **. 부터 추진한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경비로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38건(●과 25건, ●과 8건, ⊗실 2건, □과 3건) 건설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함에 따라 간접 노무비 등 제경비가 추가 계산되어 81,120천 원이 과다 설계되었다.

또한 설계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활동 실적을 확인하고 준공검사 시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와 ●과는 신호수 및 안전 시설 등에 대하여 활동사진만 준공서류에 첨부되었을 뿐 노무비 지급 서류나 안전시설물 구입비·임차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제출 되었음에도 준공처리 하는 등 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고 안전관리비 관련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사완료의 공고 등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 기구의 지정·운영)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장 지하시설물 제168조(정의) "지하시설물" 및 같은 규정 제179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설치·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관리청의 준공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주요시설물 제원, 지하구조조서, 토공 및 배수조서, 안전시설조서, 부대시설조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 20**. **. 이후 사업 준공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 지적확정 측량, 지하시설물 DB구축, 도로대장 작성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 ◇◇◇◇◇ 도로개설공사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공고, 지적확정측량, 지하시설물 DB구축, 도로대장 작성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사업 준공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공고, 지적확정 측량, 도로대장 작성을 조속히 이행하고,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을 조속히 착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 ◆◆◆◆)에 회전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교통 정온화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으로 인하여 회전식교차로 설치에서 고원식교차로와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1. 주민의견 청취 미이행 등 관련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2조(기본설계의 내용 등) 및 제25조(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으며 설계 기간 중 주민

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3.분야별 과업수행)에서는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코로나19를 사유로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 주민들과 합동조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민의견 청취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20**.*.** 준공 처리하였다.

이후 □과에서는 20**.*.** ☆☆☆소식지(*월호)에 ◇◇◇◇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을 간략하게 게재하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20**.*.** 착공 하였다.

따라서 공사 착공과 더불어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 되었고 그제서야 □과에서는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일시정지(20**.*.**.)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 ~ *.*.**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전교차로를 고원식교차로와 미끄럼방지포장으로 변경 시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20**.*.**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과 실무담당자는 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0**.*.** 하반기 ~ 20**.*.** 상반기에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 발생으로 20**.*.** 공사를 일시 정지한 이후 2년 동안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 전면해제 되었음에도 사전 설명회를 20**.*.** 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미끄럼방지포장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과에서는 20**.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 삼거리 교차로 구간 미끄럼방지포장(A=1,349.9m²)을 신규 공종으로 도급내역서에 추가 반영하였다.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발주청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관급자재로 구입·설치하는 것이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시공사가 재료를 구입하여 시공하는 것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원활한 공정 진행과 사고이월 예산의 신속한 마무리 추진을 이유로 미끄럼방지포장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시공사가 미끄럼방지포장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시공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20**. **. *.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과에서는 27,409천 원을 과다 설계 변경하고 예산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도로의 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도로점용(굴착)허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총 485건의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처리하였다.

1.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³⁹⁾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2의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다음 각 호⁴⁰⁾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9조(검토 및 허가)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⁴¹⁾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민원의처리기간 설정·공표)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는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과에서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총 485건을 허가 처리 하였는데, 민원편람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는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15건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9)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40) 1.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41) 1.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그 밖에 법령 등의 저촉 여부 및 현지어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2.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착공계 및 준공계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11조(착공계 제출)제1항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4조(공사의 완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42)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과에서는 도로점용(굴착)허가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되면 안전 관리 대책 등을 확인하여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굴착 및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받아 준공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착공계 및 준공계 접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도로점용허가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42) 1.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도로점용(굴착)허가의 경우 민원 접수부터 허가 처리 및 착공계·준공계 접수와 도로점용허가대장이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진·출입로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없는 실태이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후 차량진·출입로의 확장·축소·폐지 등에 대한 점용실태 관리 및 지도·점검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과에서는 관내 도로점용실태에 대하여 자체조사 또는 용역발주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용역 발주 등 추진방안을 검토하시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시고, 착공계 및 준공계 접수·관리 등 도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도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관내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과

내 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43)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43) 1.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교통소통대책, 3.먼지발생방지대책, 4.안전사고방지대책, 5.도로시설유지대책, 6.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13조(공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1.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 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5.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과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주, 통신주 및 공중선로 등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 ☆☆, ☆☆ 등 사업자(이하 “지중화사업자”라 한다)와

협약⁴⁴⁾을 체결하고 관내 6건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중화사업 관련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동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도로점용(굴착)허가”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구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되는 권한으로서 허가권자는 도로점용(굴착)허가 후에도 신청서류 및 허가조건 등에 따라 굴착(복구)공사 및 안전대책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하고, 허가기간 내 굴착·복구 공사가 완료되도록 관리 및 공사완료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준공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하여 ⊗실 ㄹ팀, ●과 ㉞팀, ●과 ☆팀(이하 “3개 부서”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3개 부서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계획수립 및 예산관리 업무, 관계기관 협의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의 업무(권한)인 현장관리(지상기기 설치(점용)위치 조정, 안전대책 이행 등), 준공확인 등의 업무를 ●과(㉞팀)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점용(굴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3개 부서 및 지중화사업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감사일 현재에도 공사가 진행 중으로 허가기간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내용 중 지상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 지장물 간섭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점용장소 변경에 따른 도로관리청

44)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체결

(●과)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수행하는 등 지중화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개별 부서에서 지중화사업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담당자 지정)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업무를 수행하는 ●과(▣팀)와 협의하여 「도로법」 등에 따른 점검(지도·감독, 준공확인 등)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사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권한있는 업무수행으로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2. 도로점용(굴착)공사 준공에 관한 사항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 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일 현재 3개 부서에서는 지중화사업 공사완료 시 공사비 정산 등을 이유로 각 부서에서 준공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번길 지중화사업’은 20**.*.** 사업 준공되어 동구에서는 지중화사업자로부터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3개 부서에서는 ◆청(●과)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준공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에서는 20**.*.** ‘☆동 ❖❖번길 지중화사업 (통신)’ 준공 확인 시 지하시설물도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청(●과)와 협의 없이 준공 확인을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지중화사업 준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서류 접수 및 도로관리부서의 준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계공무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개별 부서에서 지중화사업 추진 시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관리부서와 도로 관리청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 □□□□□ 조성공사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3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제5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43조(공정관리)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지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실(이하 “⊗실”이라 한다)에서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동 ☆☆☆☆에 □□□□□ 조성을 통해 ☒☒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 조성사업’(이하 “□□□□□ 조성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실에서는 20**. *. **. □□□□□ 조성공사(1단계) 준공 및 20**. *. **. □□□□□ 조성공사(2단계)를 준공하였는데, 사업내용은 도로 조성 및 편측(☒☒측)으로 □□□□□를 조성하고 ★★에서는 ◇◇◇◇◇를 설치하고 ★★ □□□ 상에 수목 식재, 조경시설물 및 목재 조형물(☉조형물, 환경친화형 ○○○ 등)을 설치하는 등 휴식·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의 주요 공종인 데크시설물 설치(깨짐, 휨, 비틀림, 고정불량 등), 식재 플랜트박스 설치[시공(접착)불량], 수목 식재(고사), ◇◇◇◇◇(교량형식)[하부 및 난간 부식], 보도블럭 포장(포장불량), 목재 조형물 설치(목재품질 및 시공상태 불량), ★★ 안전휨스 설치(상부 목재 휨, 비틀림 현상) 등의 공종에서 시공상태가 일부 불량한 사항이 확인되었다.[붙임]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설계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지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에서는 시공불량 공정 및 미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 ◎◎☆☆ □□□□□가 사업의 취지 및 본래의 목적 대로
☒☒를 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공사구간 내 시공불량 및 미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및 정비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시정 요구

제 목 폐기물 배출(처리업)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과(이하 “동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장·지정·의료·건설 등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등에 대한 허가(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미이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제2항에 따르면 지도·점검 공무원은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시료를 채취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2항 외에도 지도·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광재, 폐주물사, 소각재(비산재, 바닥재)는 매 3년마다 시료를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규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 등 44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지도·점검의 시료 채취 및 측정을 통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등 5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시료를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 등 17개 배출자 전부의 폐기물 시료 채취·측정하지 않는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2대 이상의 수집·운반 차량 장비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어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와 제68조(과태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집·운반차량을 감차한 경우 각각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구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집·운반 허가차량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차량을 변경신고 하지 않은 채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결과 허가받은 차량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장비)에 미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았다.

3.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⁴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⁴⁶⁾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르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동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감경을 시행하였다.

45) ①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6)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을 부과하도록 함

따라서, 동구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과태료 감경 등 부과내용이 적정한지 증빙자료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하여 20**.*.**. 사업장에서 제출한 ‘○개 관공서 및 ○여개의 민간처리업체와 계약 처리하고 있는 상황 등’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취득한 차량으로 20**.*.**. ~ 20**.*.**. 총 32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반사항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20**.*.**.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대체 해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차시기가 명절과 겹치고, 당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는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접수하고, 과태료 감경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징수 결정⁴⁷⁾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1/2 감경 처리한 고지서를 20**.*.**. 사업자에 송부하고 처분을 종결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의 전용차량 감차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20**.*.**.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면서, 당해 위반내용이 차량 4대의 감차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태료 400% 가중 부과 처분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당시 실무자가 인사발령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업무숙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 환경관련 업체를 지도·점검하는 업무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전문직렬 없이 구성되어 있어 관련 업무의 연계

47)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납부 의무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납부의무자에게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행위를 징수결정이라 하며, 징수결정은 징수관(또는 분임징수관)만이 할 수 있음.

성과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려워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일 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및 측정을 통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의 확인대상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료채취 등 사업장 지도·점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감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부과·감경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가중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변경신고 없이 감차하고, 허가기준(장비)에 미달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가중하여 부과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체에 대하여는 초과 납부금액(300만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폐기물 전자인계·인수서(올바로시스템) 오류 입력 과태료 미부과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과(이하 “동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는 담당자가 전자인계·인수서를 조회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인계·인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월(또는 격월) 인천광역시 ◆과로부터 오류(입력기한 초과 등) 정보를 통보 받았음에도 전자인계·인수서 (확정)입력기한을 초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오류인계내역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117건의 과태료 5,850천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확인된 전자인계·인수 오류정보에 대하여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행정 처분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위반확인서 작성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과는 매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연간 1회부터 3회씩 실시하고 있다.

1.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확인서 미작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지도·점검규정”이라 한다)」 제13조(위반사실 확인 등)에 따르면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도·점검 공무원은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서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구 소속 지도·점검 공무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위반사실을 확인서에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한 후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자체 지도·점검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 23건 중 ⊗⊗ 등 13건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절차 없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지도·점검용 확인서 관리 소홀

「지도·점검규정」 제14조(확인서 관리)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구는 매년 확인서를 발급·파기 할 경우에는 기관장인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확인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위반확인서 110매를 제작(발급)하면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담당 과장의 결재로 갈음하여 확인서 발급 후에야 부서장 개인 서명으로 받았으며, 20**.*.**~**.*. 기간 동안 5매(발급번호 ○~○번)의 확인서를 새로이 인쇄하여 발급하면서 원본을 기관장의 결재 없이 담당부서에서 임의 파기하는 등 확인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투명한 확인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확인서 작성 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위반확인서 제작(발급) 및 파기 시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는 등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시정·개선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과(이하 “동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과태료 부과 처분 지연 및 미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구에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를 살펴보면 민원 접수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위반사실을 확인한 11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를 1개월~6개월이 지나서 지연 통보하는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자인서 미징구, 자료내용의 일부 상이·불분명 등의 사유로 내부 검토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과태료 부과 불가능으로 판단하여 내부 종결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 등 1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2. 과태료 감경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르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⁴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과태료를 감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20**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 3]과 같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82건의 과태료를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자진수거)한 경우로 판단하여 감경 처분하면서 감경 사유에 대한 시정 사진 및 명확한 근거(증빙자료) 확인 없이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그리고 감경범위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의 범위(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였고, 그 결과 845만원의 과태료를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다.

48) 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보 받고도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을 지연하여 통보됨에 따라 위반 행위자가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을 지연처리 또는 미부과하는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하여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대기오염 측정(감시) 드론 활용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따라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과(이하 “동구”라 한다)는 대기,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년 환경부 국·시비 보조사업인 “측정용 드론이용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사업” 으로, 20**.*. **. 보조금을 교부받아 20**.*. **. 드론장비(항공드론 *kg, 환경감시용 드론 *kg) 2대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모듈(600g 이하) 1식을 ○○○원에 구입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는 넓은 지역에 산재 된 다수의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하여 첨단장비(드론 및 측정장비)를 활용한 고농도 배출시설 추적 및 과학적 분석을 추진하고자 ‘대기오염물질 측정 드론 구입 및 운영 계획’을 20**.**.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시행된 계획서에 따르면 운용부서는 운영인력 0명(드론 조종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정하여 정기운영(미세먼지 지도 작성)을 2회/월 실시하고, 불법행위 추적감시 환경순찰,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 시 수시운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드론장비의 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비구입 이후 소관부서의 운영인력 0명을 교육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인력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감사일 현재까지 3회 비행만을 시행하여 고가의 장비를 구입 후 구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기오염 물질 측정(감시) 드론 활용에 미흡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구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운영부서에서는 소관 팀 직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사무가 과다하여 수차례 전담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담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20**년도 환경감시드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운영계획에 따라 드론 장비를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대기중 오염물질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고가의 장비가 구입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따라 장비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사업 현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실 등 2개 부서(이하 “동구”라 한다)는 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Ⅱ.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 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 된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냉장고, 가구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방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한다)은 건물 등을 철거하려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가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구는 철거 대상 건물, 시설물 등의 거주민이 이사(이전) 등의 진행 상황 및 가구, 집기류 등 생활폐기물 방치 여부를 면밀하게 현지 조사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접 처리의 가능 여부 및 처리 방법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시공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내 매립 또는 방치된 5톤 이상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성상에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사(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실정보고 접수 후 폐기물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기존에 발주하였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설계변경 승인함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 권고

제 목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 등 행정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관법」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의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①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②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관법 시행령」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구(●과)는 20**, **, **. 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동구 경관계획’을 「경관법」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경관사업을 시행하였다.

동구(●과)에서는 총 9건의 경관사업 중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5건의 경관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4건의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동구 자체 경관위원회가 없는 실정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구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경관사업을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경관사업의 절차 및 시행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동구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도 있는 경관심의와 경관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구성을 권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과, ⊖과, ●과, ○과

내 용

1.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관한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으로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동구(●과, ⊗실, ◎과, ㉠과, ⊕과)에서는 품질시험계획 대상에 대해 건설사업자등이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보완 요구 없이 건설공사를 착공 처리하거나,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등이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등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구(㊦과, ⊗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통해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로 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등으로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설공사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등에게 그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동구(㊦과)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에 대해 소규모안전계획을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건설공사,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건설공사 및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①과

내 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표1]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1】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⁴⁹⁾(이하 ‘지침’이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제7조제1항 관련)-2.태양광 설비 시공기준-나.

49)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05호(2020. 3. 2.)

공통 준수사항-2)태양광발전 모듈-다)설치상태에 따르면 ①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 하려는 경우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지붕, 벽체 등과 평행하게 태양광 설비(BAPV형⁵⁰) 또는 BIPV형⁵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②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 [춘계(3~5월), 추계(9~11월)기준] 이상(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음)이어야 하며, ③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동구에서 20**. **. 증축한 연면적 〇m²인 청사(이하 ‘◇◇◇◇’이라 한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① 건축물 하중 고려 신재생에너지 무게 최소화, ② 지리적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적합, ③ 건물 일체형 추가하여 태양광발전 교육자료 및 청사 홍보 효과 제고, ④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이하 “BIPV”라 한다)로 설치 및 설계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가점 등을 검토하여 고정식 태양광발전설비(PV)와 BIPV 중 최종적으로 BIPV를 채택하여 ◇◇◇◇에 설치하였다.

◇◇◇◇에 설치한 BIPV는 동쪽방향으로 45도로 설치⁵²)되어 있어 동쪽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일조면에 대한 최소 모듈 방향은 만족하고 있으나 BIPV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일조시간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일사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물로 인한 음영, 모듈방향 등으로 인하여 지침에서 규정한 모듈의 일조시간인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 기준]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 ⊕⊕ 옥상, ▼▼센터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20**. **. *.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 옥상 및 ▼▼

50) 건물부착형(이하 “BAPV형: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51) 건물일체형(이하 “BIPV형: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태양광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

52)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기준

센터의 경우 10시~16시경 많은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의 경우 10시경 최대 발전량을 기록하였다가 12시부터 발전량이 급감하여 14시 이후에는 발전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침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태양광 발전 모듈의 일조시간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①과

내 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2016. 2. 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항이 신설되면서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등⁵³⁾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비율을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일 현재 동구 ①과에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80조 내지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내지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동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53) 건폐율 초과 건축: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건축: 100분의 90, 허가 받지 않은 건축: 100분의 100, 신고 하지 않은 건축: 100분의 70

과태료등 부과지침」(이하 「동구지침」이라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구지침」을 적용하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에서는 각 호의 비율을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산정비율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위반건축물에 대한과태료등부과지침」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주의(훈계) 요구

제 목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동구 ♡실에서는 ◆◆운동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부터 **.*.**까지(○일간) 동구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운동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동장 운영 및 사용 개선방안(●과-****, 20**.*.**.)”에서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및 제22조(주민소송)에 따라 부당함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개선 처분요구를 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에 따르면 공원관리청⁵⁴⁾과 공원수탁관리자⁵⁵⁾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등의 공원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5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공원녹지조례’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9조(허가의 취소 등)에서는 사용허가 받은 공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환불·면제·감면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별표2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조례 별표2. 4.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 등 공원시설과 야간조경시설·야영장별 사용료는 규모,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하 ‘단체위임사무’라고 함)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조례)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른 국가사무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같은 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고 함)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⁵⁶⁾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이하 ‘위임조례’라 한다)제2조(위임사항)에

56) ① [대법원, 99추85, 2005.30.]공원조례증개정조례안무효: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대법원, 95추32, 1995.12.22.]조례안개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 관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주제공원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구 ☆☆☆소재의 ◆◆운동장을 공원녹지 조례에 따라서 관리·운영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20**년 인천광역시 정기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의 합리적 개정을 검토하라는 개선 처분 요구에 대하여 20**년 동구 정기 종합감사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이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구청장은 자체 조례를 근거로 감사일 현재까지 권한이 없는 사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개선] ◆◆운동장의 사용료 징수 등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시설을 운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동구 ○과와 ●과(이하 ‘동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공원시설 정비
를 위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 □□□ □□□□□□□ □□□□□공원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으로 노후 공원 리모델링(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1)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⁵⁷⁾, 2)소규모 공원
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동구 ○과와 ●과는 □□공원 등 6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57) 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공원시설 위치 및 면적 ② 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등 동선 체계 ③ 공원시설 내 공작물 종류 및 수량 ④ 녹지 면적 등 공원시설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는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경미한 사항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설치·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공원과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 공원정비(리모델링) 사업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구에서는 **공원 등 총 12개소의 조성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1. 도시공원 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51조(도시공원 대장)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에는 도시공원대장은 별표8의 작성기준⁵⁸⁾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시공원대장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원대장)에는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구 ●과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초결정 및 변경 결정 작성을 누락하였고, 조경시설에 녹지 및 수목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58) ①공원 종류, 명칭, 위치 ②관리청 성명 및 주소 ③관리방법, 연혁, 토지소유자별 명세 및 권리 등 ④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⑤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⑥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면(도시공원 경계, 공원조성계획 내용, 공원시설 내용, 점용목적물 내용) 등

공원시설 증감 내역을 20**년도 이후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000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별도작성하여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시설관리대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는 등 도시공원 대장 등의 작성·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소홀

동구 ●과에서는 도시공원 9개소, 쉼터 2개소에 총 14개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및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및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따라 놀이시설 및 기구별 안전점검 항목을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수리

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 ●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①놀이시설별 세부항목의 점검 내용 누락 작성 ②수리이력대장 미 작성·미 관리 ③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안전교육을 변경된 날부터 3개월까지 미 이수 등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관리에 소홀한([붙임 참고])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점검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 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직원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동구 ●과(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도시경관 향상과 그늘제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관내 32개 노선에 4,588주의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1】 가로수 조성 현황

(단위 : 주)

계	은행나무	버즘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4,588	2,122	431	356	52	883	120	624

※ 자료 : 동구 홈페이지 자료 발췌

1. 가로수 대장 작성·관리 소홀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 도시숲 조례’라고 한다) 제28조(가로수 점검)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매년 4회

이상 정기점검을 3월, 5월, 9월, 11월에 실시하고,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시 도시숲 조례 제33조(관리대장)에 따라 관리청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의 조성현황 및 정기·수시점검 결과 등 관리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의 가로수 관련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 ●과는 가로수 정기점검을 매년 11월 1회만 실시하고, 가로수 병해충방제 및 가지치기에 대한 관리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가로수 관리 사항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가로수 협의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가로수 증감 현황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 관리대장의 가로수 관련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관리 하지 않는 등 가로수 대장의 작성·관리 소홀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가로수 가지치기 소홀

동구는 수목 생육환경 개선, 주변 상가 간판 가림 등의 민원 해결,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년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전지공사’를 시행하였다.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별표1. 4. 가로수의 관리 기준에 따르면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및 차량 등의 통행,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시 도시숲 조례 제23조(가지치기)에 따르면 가로수는 자연형 육성을 원칙으로 하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아래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가지치기 기준)에 따르면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과는 수형조절(상가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외 강전지를 지양하도록 각 군·구에 가로수 관리 주의사항을 통보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동구는 ‘20**년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전지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로 ◇◇◇◇ 주변 상가지역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B51이상) 15주에 대하여는 수형 조절 및 생육환경 개선⁵⁹⁾을 위해 전지형태를 강정전으로 하고, 고유수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준자연형(원추형)으로 가지치기 방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공사설명서 II.특별시방서 2.전지에 따르면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자는 사전 견본 전정을 실시한 후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가로수의 식물적 특성을 인식하여 그 나무에 맞는 수관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과는 20**, *, **, 착공일에 가로수 노선별 가지치기 방법 및

59) 배수구 막힘과 건물 가림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 사항 해소

일정을 협의 후 20**, *, **, ☆☆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보고 받았으나 현장에서 견본 전정을 지시·확인하지 않았고, 공사 시행사가 현장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수목의 중심 줄기에서 생장한 가지를 모두 제거한 결과 원추형의 메타세콰이어가 그 고유수형을 상실하였고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경관 훼손 및 수목생장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의]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가로수 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 □□□□ 조성사업 정산준공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구 ●과(이하 ‘동구’라 한다.)에서는 대기환경 개선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 ❖❖❖❖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발주자는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을 요청한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규정의 사용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를 사용내역으로 부당하게 제출하였으나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981,300원을 초과 집행하였다.

2.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6절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다 또는 불필요한 공사비의 집행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계약집행기준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후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 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 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 ❖❖❖❖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녹지 경계석(2,103.3m) 시공시 합판거푸집 설계서와 다르게 2면이 아닌 1면만 사용하였 음에도 이를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전 시정조치를 못하였고 준공 검사 시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9,175,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불필요하게 집행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 [시정] ① ❖❖❖❖ ❖❖❖❖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규정과 다르게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누락 시공된 녹지경계석 (합판거푸집) 공사비 등 총 금10,156,3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자동차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ㄱ과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종 및 장치 등)에 따르면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하며,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구 ㄱ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에서 정한 이행명령 기한 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가 이행되도록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미이행 건에 대하여 고발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ㄱ과

내 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 ㄱ과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종료일이 만료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최초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성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종료일이 만료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 보안등 관련 구축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동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 보안등 LED 교체 사업을 통하여 야간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어하기 위하여 보안등 점멸기를 설치하여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다.

1. ◇◇◇◇ 사업부서 검토의견 미반영

인천광역시 동구 ◆◆실(이하 “◆◆실”이라 한다)에서는 민선○기 ○년차를 맞이하여 동구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 발굴 및 구정 반영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 ☆☆☆☆☆-☆☆ ☆☆☆☆ ☆☆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실-*****, 20**. *. **)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 발굴 사업으로 비콘기능의 스마트 점멸기 적용으로 인천시 안전 서비스인 ㉠㉠㉠앱과 연동하여 아동 및 여성,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도시 조성 구축을 위한 ㉠㉠㉠ ㉠㉠ ㉠㉠ 구축사업이 필요함을 부서 검토 결과와 함께 ◆◆실에 제출(●과-****, 20**. *. **)하였고 20**. *. **일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과에서 제출한 해당 부서 검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①비콘⁶⁰⁾ 기능(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의 스마트 점멸기가 인천 ㉠㉠㉠앱과 연동이 가능한지

60) 보안등에 근거리무선통신(Bluetooth) 설비를 추가, 스마트폰 및 각종 사물센서와의 인터넷 연결을 통한 위치정보 확인 및 생활기반 정보인식 가능토록 한 장치.

그러나 ●과에서는 ◇◇◇◇ 발굴사업 해당 부서 검토의견 사항으로 비콘기능(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의 스마트 점멸기가 인천 ㉠㉠㉠앱과 연동이 가능한지 시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20**년 *월 ‘△△△ △△△△ △△△△△(2단계) ☒☒☒보안등 설치공사’ 201개소, 20**년 *월 ‘☆☆☆ ☆☆☆☆ ☆☆☆ 보안등 교체공사’ 226개소, 20**년 *월 ‘㉠㉠㉠ 보안등 LED 교체공사’로 25개소에 비콘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인천 ‘㉠㉠㉠’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개발비 분담(프로그램개발 등)비용 약 7천만원, ②안드로이드 체계만 사용가능, ③배터리 과다 소진 등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비콘 점멸기를 설치함으로써, 동구 ◇◇◇◇ 발굴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20**년 **월 현재까지 비콘 점멸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기 설치된 비콘 점멸기를 활용한 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452개소에 소요된 37,064천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 발굴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 소요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구 분	제 목	관련부서
수범사례 1	2022년 청렴 인관 교육	기획감사실
수범사례 2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및 찾아가는 합동상담실 운영	기획감사실
수범사례 3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	도시전략실
수범사례 4	직원후생복지제도 확대	총무과
수범사례 5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주민자치과
수범사례 6	수마트지킴이 지원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수범사례 7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의 기준 개선	자원순환과
수범사례 8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사업 구비 절감	환경위생과
수범사례 9	위험 빈집 긴급 안전조치 시행	건축과
수범사례 1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건축과
수범사례 11	건강취약계층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추진	보건행정과
수범사례 12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건강증진과

□ **현 황**

○ 일 시

- 1차 : 2022. 10. 25.(화) 10:00~11:30

- 2차 : 2022. 10. 25.(화) 15:00~16:30

○ 장 소 :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 교육대상 : 전직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 소요예산 : 7,000천원 (구비)

□ **수범내용**

○ 545명 참석 (1차 259명 / 2차 286명), 참석율(87.3%)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부패방지에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공무원이 가져야할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소양 교육

□ **기대효과**

○ 동구 공무원의 청렴과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렴 동구 · 인권 존중 동구"를 구현

□ **관련사진**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032-770-6074)**

□ 추진배경

-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 나아가 법률상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세금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활용
- 방문상담이 필요한 마을세무사 제도와 접근성이 낮은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통합하여 “찾아가는 합동상담실”운영으로 찾아가는 세금·법률 상담 진행

□ 수범내용

- 무료법률 상담 운영
 - 일 시 : 매월 2회 운영
 - 운영횟수 : 22회
 - 상담건수 : 112회
- 찾아가는 합동상담실 운영
 - 일 시 : 매월 1~2회(10월~12월)
 - 운영횟수 : 4회(예정)

일 시	장 소	상 담 자		상담건수
2022.10.14.(금) 14시~16시	화도진 축제 행사장내	마을세무사	서두범	6
		법률상담관	이승재	8
2022.10.24.(월) 14시~16시	주민행복센터(2층)	마을세무사	김창수	6
2022.11.14.(월) 10시~12시	송림3.5동 회의실	마을세무사	서두범	4
		법률상담관	이승재	8
2022.12.23.(금) 14시~16시	평생학습관	마을세무사	배호식	예정
		법률상담관	이승재	예정

□ 기대효과

○ 적극행정 실천

- 주민의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세금·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합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적극행정 실천

○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세금상담)과 편의성(방문상담)을 높여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임

□ 관련사진(보도자료)

일자	2022.10.14.	2022.10.24.	2022.11.14.
내용	<p>중앙신문 2022년 10월 18일 (화) 수도권 11면</p>  <p>동구 마을세무사와 변호사, 합동상담실 개최 동구는 지난 14일 제33회 화도진축제 행사장 내에서 '찾아가는 합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무료 상담에는 이승재 변호사(동구 법률상담관)와 서두범 세무사(동구 마을세무사)가 참여, 세금과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p>	<p>내외일보 2022년 10월 26일 (수)</p> <p>인천 동구,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개최</p>  <p>인천 동구는 지난 24일 주민행복센터에서 찾아가는 합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상담은 동구 마을세무사인 김창수 세무사가 참여, 세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김창진 동구청장은 "전화로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세무상담을 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p>	<p>전대일보 2022년 11월 17일 (목) 수도권 06면</p> <p>동구, '찾아가는 합동상담실' 성료</p> <p>송림25동 행정복지센터서 세금·법률문제 상담 등 동구 마을세무사와 변호사, 합동상담실 개최</p>  <p>인천 동구는 송림2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합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기내에 신청하면 된다. 동구 마을세무사 이승재 변호사(동구 법률상담관)와 서두범 세무사(동구 마을세무사)가 참여, 세금과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운영했다. 김창진 동구청장은 "전화로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세무상담을 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p>

□ 담당부서 : 동구청 기획감사실 (☎032-770-6932)

□ 현 황[추진배경]

- 인천 동구 7개동 중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송림동이며, 차량 통행이 많은 송림오거리와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
- 높은 차량 통행량과 전통시장 특성상 노령 보행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시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도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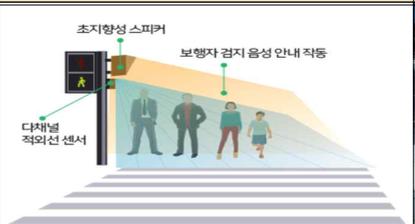
□ 수범내용

- 사업위치 :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횡단보도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09.
- 사업비 : 686백만원(국비 343 / 시비 171.5 / 구비 171.5)
 ※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비 보조
- 사업내용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총 19개소)

□ 기대효과

- 공모 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사업효과 극대화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 관련사진

바닥신호등	보행 음성안내 시스템	활주로형 바닥유도등
		
보행정보를 바닥신호로 표출	무단횡단 경고 등 음성안내	무신호 횡단보도 식별을 위한 LED 유도등 표출

□ 담당부서 : 도시전략실 (☎032-770-6676)

□ 현 황

- 주5일제 근무, 탄력적 근무, 공무원의 단체 활동, 근무시간 및 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복지 욕구 또한 다양화 및 선진화 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수범내용 : 2022년 신규사업 확대시행

- 생명/상해 단체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후생복지제도 필수항목인 생명/상해 보험료 (1억원보장)
 - 소요예산 : 95백만원
 - 추진실적 : 총 892명 / 74백만원(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보상한도 : 1청구당 1억 /연간 총 3억
 - 내 용 : 직원이 업무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등 지원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금액 : 14백만원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 일 시 : 2022. 5. ~11. (3회차 운영)
 - 대 상 : 80명 내외 (회차별 20~30명)
 - 주요내용 : 가족별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영극, 영화, 뮤지컬 등 공연 관람, 공방교실, 문화체험 활동 등)
 - 소요예산 : 16백만원(가족당 200천원 이내)
-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내용 : 전국 휴양시설 이용 숙박비 지원(1인당 2박, 최대 2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사후 영수증 청구
 - 소요예산 : 80백만원

□ 기대효과

-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근무능률 향상 도모

□ 담당부서 : 총무과 [☎617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5. ~ 2022. 10.
- (위 치) 동구 솔빛로22번길 2
- (소요예산) 15,442백만원(특별교부세 1,000/ 특별조정교부금 1,500/ 구비 12,942)
- (사업규모) 대지 1,134㎡ / 연면적 3744.32㎡(지하2층, 지상6층)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9. 5. :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 수립
 - 2020. 11. : 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1,505백만원)
 - 2020. 1. :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동구⇄도시공사)
 - 2021. 4.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15억) / 특별교부세 교부(10억)
 - 2021. 8. ~ 10. : 본공사 착수 및 준공
 - 2022. 11. :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입주
 - 2022. 12. : 송현1·2동 복합청사 개청식 및 동구가족센터 입주

□ 수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청사 노후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공간 마련
- 철저한 사업장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없는 복합청사 준공 노력

□ 관련사진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032-770-6162)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4조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
-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장애인등 실종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예산 등의 지원)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은 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제약을 받기도 하며 경계의식이 부족하여 지역사회에서 실종 발생율이 높음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전 체	568	516	457	409	305
발달장애인 실종	60	54	34	29	22

※ 최근 5년간 동구,중구 실종 신고접수 (인천중부경찰서 통계자료)

-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돌봄 스트레스 및 높은 불안감은 우울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육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120명
 - 위치 정보 및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가구(필수)
 - * 보호자는 직계가족 포함 활동보조사, 시설담당자 등이 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장애인 제외

○ 사 업 비 : 33,600천원(전액 구비)

○ 지원내용

- 지원기기 : “스마트지킴이”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 스마트지킴이(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1대 무료 지급

※ 2년 통신이용료 및 AS 무상 지원(단, 파손 및 분실 시 본인부담)

- 인천 중부경찰서에 정보제공을 통해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에게 GP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지킴이”를 지원하여 실종 및 노출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지적장애인 등의 안전한 삶 지향 및 자립 능력 제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770-6438)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의 기준 개선

□ 현 황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칙)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광역시 2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예외)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 방법 등을 고려하여 1/2범위 내에서 기준 내 다른 차량으로 대체 가능
- 관련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전용차량의 1/2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광역시는 반드시 압착차량을 보유해야 하나, 광역시 외지역에서는 밀폐형 차량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해지므로 법규 적용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결여하는 문제점 발생.
- 영업대상 폐기물의 성상이 압축·압착이 불필요한 경우 압축·압착 차량 없이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특별시·광역시에 한하여 단순히 법에 규정한 허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압축·압착차량을 보유토록 하여 신청인(사업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수범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제출 [자원순환과-10984호(2022.8.7.)]
 - (건의내용)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기준에 대한 재량규정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영업대상 폐기물의 성상이 압축·압착이 불필요한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신청인(사업주)가 영업의 필요에 따라 구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 '22년 하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정기건의 부처협의 결과 송부(기획감사실-16427호, 2022.10.17.) → 환경부 검토 결과 "**수용**"
 - (검토의견)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압착·압축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어려운 음식물류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8 다목 개정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 추가

□ 기대효과

-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기준에 대한 재량 규정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업무담당자의 혼선 방지 및 규정 적용의 통일성, 형평성 등 확보
- 신청인(사업주)이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영업 활동에 불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대신 폐기물 종류와 수거 방법에 따라 장비(차량)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 현실화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

□ 관련사진

① 압착·압축차량



압축진개차



압착식 진개차

②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차량 종류



스크류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덤프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032-770-6432)

□ 현 황

- (목 적)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원인 분석 및 우리 구만의 대기오염 개선방안 마련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측정장소) 여성회관,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 (측정항목) 미세먼지(PM₁₀) 및 중금속 12개 항목*
* 구리, 납, 철, 비소, 니켈, 망간, 카드뮴, 크롬, 베릴륨,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 (사 업 비) 60,000천 원/반기 (발전소특별회계, 구비)

□ 수범내용

- 우리 구는 인천시 평균보다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치가 높은 상황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이 필요함.
-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 측정·분석업체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분석자의 연속성 결여,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 문제점이 있음.
- 시 대기보전과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023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에서 동구지역 미세먼지 및 중금속 분석 협조하기로 함.
- 추진경과
 -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 용역(민간업체) 시행 : 2019 ~ 2022년
 - 시 의회, 시 대기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 측정 협조 요청 : 2022. 7. ~ 8.
 - 보건환경연구원(대기평가과) 협의 완료 : 2022. 8.
- 향후계획
 - (기 간) 연 6회(1회/2월, 2023년도 이후)
 - (측정장소) 중금속 측정망 1개소(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 (분석기관) 보건환경연구원(대기평가과)
 - (내 용)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 지속 실시

기대효과

-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구비 절감
-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등 대기오염 개선 자료 활용

관련사진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032-770-6527)

□ 추진 배경

- 집중호우(2022.8.8.)에 따른 건물 벽면 붕괴사고 발생으로 추가 붕괴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 필요
 - 주변 주택 출입구 방향으로 낙하하여 주민들의 극도의 불안감 호소
 - * 붕괴 주택의 경우 무허가 빈집으로 건물주가 주택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나 긴급한 주민의 안전 확보 필요
 - 인천시장, 동구청장 및 주민들의 긴급 복구 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
 - 동구 건축과 및 유관 부서, 주민 등 민·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타지역 재난 복구에 비해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

□ 추진 내용

- 사고 경위 : 집중호우로 인한 빈집 및 안전펜스 붕괴(2022.8.8.)
- 현장 상황 : 붕괴 잔재물이 주변 주택 출입구 방향으로 낙하
- 피해 상황 : 이재민 발생(3가구, 5명)
 - 인명피해 우려 및 추가 붕괴 우려 심각
 - 추가 붕괴 위험에 따른 통행 제한으로 주변 상인 영업 손실 우려
- 추진 내용 : 건물 전체 철거 및 주변 위험요소 제거(붕괴 잔재물 등)

✓ **건물현황**(송현동 98-239, 무허가 빈집)
(건축주) 조○○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외벽: 흙벽돌) **(연면적)** 111㎡(3층)

□ 추진 실적

- 추가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안전조치 방안 마련
 - 한전 및 도시가스 관련 기관, 주변 거주민 및 상인들과의 안전 조치 회의 및 협의를 통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8.8.~ , 매일 1회 이상 실시)

-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市와 동구청(건축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확보(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000천원)
- 2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붕괴 위험 건축물 주변 통행 제한 실시
 - 주민의 최일선인 통장을 중심으로한 협력체계 구축(주민과의 긴밀한 소통 및 합의를 통한 긴급 철거 시행 결정)
- 건물 철거 후 추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 정화조 붕괴, 오물 역류 및 악취 발생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거주 안정성 확보(정화조 맨홀 제거 및 콘크리트 시공)
- 붕괴 현장 안전 조치 완료(8.11.~8.24. / 14일)



붕괴 발생 당시 현장(8.11.)

붕괴 잔재물이 주변 주택 출입구 방향으로 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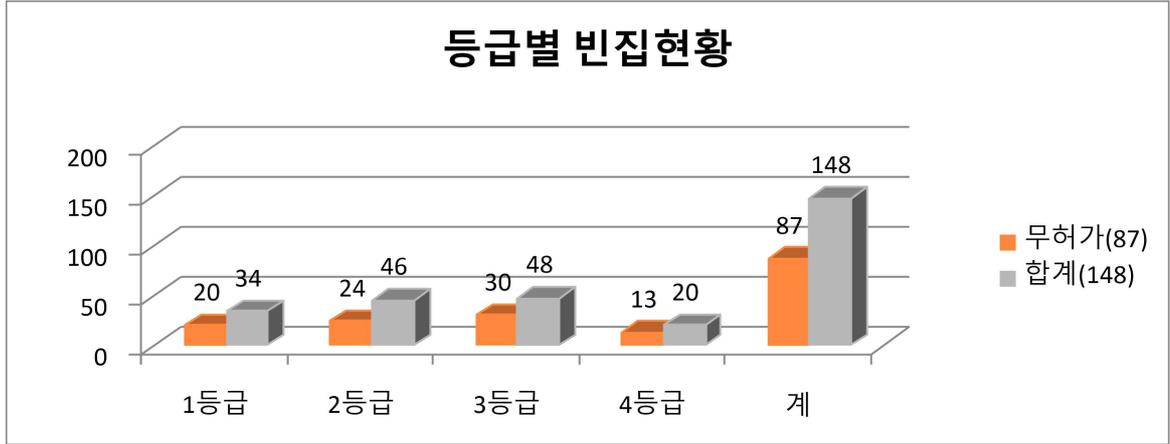
안전 조치(철거) 완료 후(8.24.)

정화조 역류 방지 안전조치 시행 (맨홀 제거 및 콘크리트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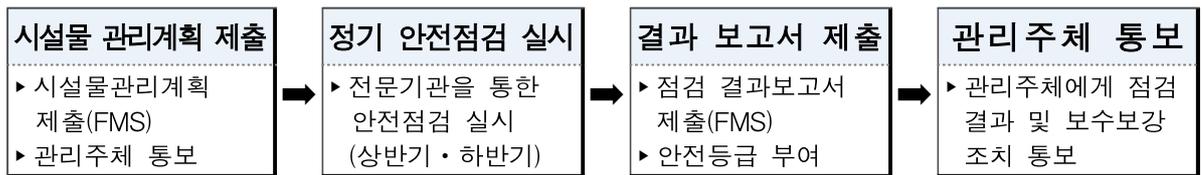
□ 추진 성과

-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추가 사건·사고 없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에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동구 관내 위험 건축물 정비 계획 마련

- 방치된 위험 빈집(4등급, 무허가 포함 20호) 철거* 및 활용**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익적 기능 회복
 - * 철거비(시·구비 5:5 매칭 / 무허가 빈집의 경우 전액 구비 활용)
 - ** 동구 마을공간 조성(마을정원, 쉼터, 마을 주차장, 마을 체육관 등)



- 관리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통한 적극적 안전관리 및 공중의 안전확보 마련
 - * 만석1·2차A, 삼부A, 화수상가A, 화수맨션 등 11개소
 - ** 전액 구비사업[80,000천원 / 11개소×2회(상·하반기)]



□ 언론 보도



폭우에 벽이 무너져 “폭탄 떨어진 줄...”

현장르포

인천 송현동 집중호우 피해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큰 소리가 났어요.”

9일 오전 10시30분께 찾은 인천 동구 송현동 한 골목. 너비 5m 가량의 골목 전체를 황토색 벽돌들이 뒤덮고 있었다. 전날 폭우로 빈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이 골목을 덮친 것이다. 건물 바깥에 임시로 세워 놓은 기립막도 벽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철관과 쇠파이프가 휘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전봇대는 벽돌에 맞아 넘어져 있었다.

무너진 외벽 벽돌은 골목에 있는 주택들의 출입구도 막아버렸다. 이곳에 거주하는 김홍식(77)씨는 “큰 소리에 놀리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지만, 쏟아져 내린 벽돌과 절반 기립막이 현관문을 막고 있어서 나갈 수 없었다”며 “119 대원들이 쇠톱으로 현관문을 절단한 후에 집에서 겨우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시가림막 휘어지고 전봇대 넘어져

현관문 막아 119도움으로 주민 탈출

무너진 건물 방지 잣은 민원 하소연

인천 곳곳 침수... 붕괴 위험 대피

유시장, 휴가 하루만에 복귀 접점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컸기에 김중식씨 부부를 포함해 인근에 사는 3가구 주민 5명은 구장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처 등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이 오랫동안 안 방지돼 있어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 외부에 가림막을 설치했을 뿐이었다고 인근 주민들은 하소연했다. 건물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경민(34)씨는 “예전에도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에 벽돌이 떨어져 파손된 적이 있다. 항상 불안했다”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동구 관계자는 “무너진 잔해물을 곧 처리할 예정”이라며 “모텔이나 친·인척 집으로 이동한 분들은 대안적신자사를 통해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구청 차원에서 숙박비용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인천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용산군 영흥도 346.5㎜, 부평구 구산동 298.5㎜, 중구 천동 247.2㎜ 등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119에 신고된 호우 피해는 367건이며, 10개 군·구에도 277건이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 용진군 영흥면 한 도로가 침수됐고, 같은 시각 인천 사구 가좌동 한 빌라 지하가 침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를 지원했다. 폭우로 인한 침수와 벽면 붕괴 등으로 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중구 유남동에서는 울벽 붕괴 위험에 놓인 주민 34명이 대피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0개 군·구 회의를 주재하고 신사태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와 상습 침수구역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이어 중구 유남동 울벽붕괴 위험지역과 부평구 일신시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폭우 피해가 잇따르자 휴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유 시장은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번 주 내내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에 신경을 써달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관련기사 2면

현민정-수습 백요은 기자
bmc0502@kyeongin.com

□ 담당부서 : 동구청 건축과 (☎032-770-66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개요

- 수상내역 : 장려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709(2020.10.8.)호]
- 사례내용 :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 규제혁신 제안 내용

- 현 황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에 구분지상권 설정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가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및 주택 등의 수직 지하공간을 관통하여 터널형태로 조성·운영됨으로써 상부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 문제점
 - 대지권 설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대출규제 수반
 - 법령상 입체적 도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행위에 대한 기준 부재로 행정업무 혼선
- 개선방안
 -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은행대출규제 등 재산권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대책 요청
 -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입체적 도로구역의 직상부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및 도로구역 내 행위 허용 기준 완화
- 기대효과
 -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 행사 시 부담 완화

□ 담당부서 : 동구청 건축과 (☎032-770-6631)

□ 동절기 추가접종 현황

- 접종대상 : 18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 가능
- 접종현황 : (60세 이상) **24.4%** (감염취약시설) **26.1%**

(‘22.11.30. 0시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대상자 ¹⁾	접종자	접종률
60세 이상 계	18,291	4,471	24.4
80대 이상	3,262	1,082	33.1
70~79세	5,818	1,812	31.1
60~69세	9,211	1,577	17.1
감염취약시설 계	875	229	26.1
요양병원·시설 ²⁾	768	212	27.6
정신건강증진시설	55	14	25.4
노숙인시설	3	0	0.0
장애인시설	49	3	6.1

1) '22.11.30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확진일 등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

※ (60세 이상) 인천 **18.9%**, 전국 **20.2%** (감염취약시설) 인천 **23.3%**, 전국 **25.5%**

□ 수범내용

-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9개소) 접종독려 및 방문접종 실시(10회/173명)
- 유관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 등) 접종독려 협조요청 및 일일 접종실적 공유
-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방접종 주민 홍보 및 예약 안내
- 지역행사(화도진축제 등) 연계 동절기 추가접종'홍보 캠페인'
 - (기 간) '22. 10. 14.(금) ~ 10. 15.(토)
 - (장 소) 동인천역 북광장
 - (내 용) 동절기 추가접종 효과성 홍보 및 안내문 배부(2,000부)
- 노인일자리사업 평가회 연계'찾아가는 현장예약 서비스'
 - (기 간) '22. 11. 23.(수) ~ 11. 24.(목)
 - (장 소) 동구주민행복센터 강당
 - (대상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157명
 - (내 용) 동절기 예방접종 홍보·상담 및 현장 예약접수(279명)

- 60세 이상 미접종자 1:1 전화상담 및 사전예약 지원
-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등 방문 홍보 및 현장예약 지원
- 동절기 추가접종률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 실시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접종 안내
 -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 관내 아파트(31개소), 노인복지시설(34개소), 종교시설(49개소) 등 방문 동절기 추가접종 홍보 및 안내문(포스터, 안내문) 배포(3,400부)
 - 동인천역 북광장·송림오거리 전광판 송출
 - 보건소 건강리더를 통한 동절기 추가접종 주민 안내 등
- 보건소 방문 동절기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기념품) 제공

□ 기대효과

-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 강화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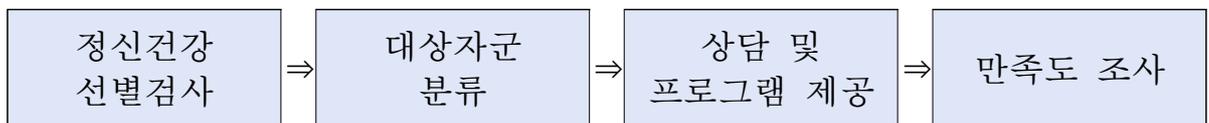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032-770-5746)

□ 추진배경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자살사고(부산 동구, 2021. 5. 23.) 등 코로나 비상근무체제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번 아웃(Burn-out) 및 직무스트레스 심화

□ 수범내용

- 기 간 : 2021. 7. 6. ~ 11. 30.
- 대 상 : 43명(코로나19 보건소 전담 대응인력)
- 참여인원 : 39명 (참여율 : 90.7%)
- 추진과정



- 주요내용
 - 정신건강 심리지원 KIT 제공
 - 고위험군 대상 전문의 상담 지원
 - EMDR 활용 회복 프로그램
 - 마음건강 정보 제공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번 아웃(Burn-out) 예방
-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자가관리 능력 배양

□ 관련사진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032-770-5732)